

2024년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

2024. 4.



교 육 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목 차

I. 추진배경 및 2023년 주요 성과	1
II. 2024년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4
III. 2024년 추진 과제	5
1. 체육수업 운영 다양화	5
2. 학생 체육활동 일상화	15
3.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23
4. 학교운동부 운영 체계화	29
5. 초등 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45
6. 늘봄학교 체육활동 지원	50
7. 2024년 특별교부금 운영 집행계획	51
8.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국고)	54
9. 2024년 학교체육진흥회 사업계획(안)	55
【참고자료】 PAPS 및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마감 처리 ..	57
【참고자료】 나이스 학교장 확인서 발급	58
【참고자료】 365+ 체육온활동 콘텐츠	59
【참고자료】 e-School 학습지원 콘텐츠	62

I. 추진 배경 및 2023년 주요성과

1 추진 배경

1 코로나19 이후 학생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요구 제기

- 장기간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의 실제 운동량이 감소하고, 비만 학생이 증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회복 지원 필요
 - ※ ['17~'23년 초중고 학생 비만균율(비만+과체중)] : ('17) 23.9% → ('23) 29.6%
- 다른 나라에 비해 '청소년(11~17세)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
 - * [WHO, 2019, 세계 평균 81.0%] 한국 94.2% 필리핀 93.4%, 캐나다 76.3%, 핀란드 75.4%

2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 부족

- 아동·청소년기에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발육·발달 촉진, 건강 유지·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추진
-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틈새 시간 활용 방법 안내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여건 조성 필요
- 학창 시절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스포츠 참여 경험을 통해 평생 즐길 수 있도록 학교급별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노력 필요
 - * ['23년 현황 : 140천팀, 335만명] (초) 104천팀 233만명 (중) 21천팀 61만명 (고) 15천팀 41만명

3 일반학생 체육활동 참여와 학생선수 전인적 육성 지원 강화

-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일상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여건 마련 등을 위한 학교 현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다소 부족
-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지원과 진로상담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돕고, 우수 학생선수로 육성하는 지원체계 구축 요구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 확대와 학생선수 지원 등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2 2023년 주요성과

□ 학교단위 체육활동 확대

- (미래형 체육수업 지원) 학교체육 포털 개선, 체육수업 앱(1종) 개발 및 체육활동 영상(148종)을 보급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체육수업 지원

		
학교체육 포털('23년 개선)	체육수업 앱 개발·보급('23.1월~)	체육활동 영상콘텐츠 보급(148종)

-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학교→지역→전국) 운영 및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 대회' 신설 개최·운영
 - ※ 종목 : ('22년) 대면(16개) 비대면(15개) → ('23년) 대면(18개) 비대면(20개)
 - ※ 제1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농구대회 신설 39팀, 429(468)명 학생 참가
- 저체력 및 체육 기피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도 제고를 위한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확대('22년 15종목~'23년 20종목)

			
대통령 체육활동 참관(7.3.)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10.20.~11.26.)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8.16.~9.23.)	학교스포츠클럽(3.25.)

- (건강체력 증진) 저학년 대상 학생체력평가(PAPS) 기준 개발 및 저체력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 참여율 제고 등을 통한 건강체력 회복 도모
 - ※ 저체력 학생 비율 변화(PAPS 4·5등급) : ('22년) 16.6% → ('23년) 15.9%
- (체육활동 상시화) 아침 등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운동 습관을 길러 건강한 생활 도모
 - * 학교 여건에 따라 희망 학생 대상으로 아침·점심·방과 후 등 시간 활용
 - ※ '23년 신설 사업으로 체육운동아리 운영학교 : ('23년) 250억원, 5,677교

- 학생의 체력·운동기능 수준 고려, '365+ 체육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하여 재미있고 흥미롭게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여건 조성
- * 초급(놀이형), 중급(게임형), 고급(스포츠형) 등 30개 주제, 148개 영상

- (학생선수 학습지원) 초등 학생선수 온라인 학습지원 제공하고, 진로·진학에 관한 학습지원 멘토링 운영(30교)을 통해 관련 정보제공
- ※ e-school 운영: ('22년) 3,491교, 120,667명 → ('23년) 5,314교, 146,225명
- ※ 진로·진학상담 확대·운영('22년 34명 → '23년 62명)

- (연수 강화) 해경청과 협업하여 생존수영교육 강사 연수 확대*
- * 교원 연수 : ('22년) 5회, 189명 → ('23년) 7회, 230명
- ※ 초등 생존수영교육 현황 : ('22년) 2,013,375명 → ('23년) 2,166,107명



부총리 생존수영 교육 현장 방문(6.14.)

생존수영 워크숍 및 연수(7.6~7.7.)

교원 생존수영 연수(7.31, 8.31.)

- 교원과 학교운동부도사의 체육교육·활동 전문지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23년 신규 원격 연수과정 개설·운영
- ※ (연수과정 개설) 온오프라인 연계 체육교육의 실제, 학교운동부의 이해와 실제, 교원 맞춤형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역량 강화

- (늘봄학교 운영 지원) 교육청, 대학, 종목단체 간 MOU를 체결하여 전문체육 인력풀 구축을 통해 늘봄학교 체육활동 지원 여건 마련
- ※ (업무협약) 교육부-대한축구·야구·태권도 등 33개 종목단체(6.28), 교육부-한국체육대학교(6.20), 용인대(7.5), 한국대학교육협의회(8.29)



대한야구협회 업무협약(4.17.)

대한축구협회 업무협약(4.28.)

한체대 업무협약(6.20)

대한태권도협회 업무협약(6.28.)

경기교육청용인대 업무협약(7.5)

II. 2024년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목표

학교체육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방향

학생 체육활동 일상화로 바르고 건강한 인재 육성

정책영역

정책과제

체육수업 운영 다양화

- 체육과 교육과정 효과적 적용
- 체육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

학생 체육활동 일상화

-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내실화
-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틈새 운동
- 대외 협력을 통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식 다양화

학교운동부 운영 체계화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 학교운동부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초등 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 초등 1·2 「즐거운 생활」 신체활동 영역 분리 추진
- 초등 생존수영교육 효과적 운영
- 초등 스포츠강사 운영 현황

늘봄학교 체육활동 지원

- 체육단체 연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 지역자원 활용 연계 체제 구축

Ⅲ. 2024년 추진 과제

1 체육수업 운영 다양화

1-1 체육과 교육과정 효과적 적용

□ 체육과 교육과정 설계 개요¹⁾

- 체육과는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
- 신체활동은 움직임 수행·건강관리·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으로 구성

【 체육과 신체활동 역량(3가지) 】

- ▶ (움직임 수행 역량) 신체활동에 적합한 움직임 기능과 방법을 효율적·심미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 ▶ (건강관리 역량) 체력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능력
- ▶ (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 다양한 신체활동 문화를 전 생애 동안 즐기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 (체육과 내용) 운동, 스포츠, 표현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는 움직임 기술의 발달을 통해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신체활동 형식
 - (운동) 체력과 운동기능 향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신체활동으로 체력 운동과 건강 활동으로 구분
 - (스포츠) 제도화되고 조직화한 신체활동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태적 결합을 추구하는 신체활동
 - ※ 기술의 수월성을 겨루는 '기술형 스포츠', 전략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전략형 스포츠', 다양한 환경 맥락에 따라 활동 특성이 나타나는 '생태형 스포츠'로 분류
 - (표현) 생각·감정을 연속된 움직임과 다양한 동작으로 표현하는 신체활동
-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 운동·스포츠·표현이라는 신체활동 형식의 개인적·사회적 가치, 활동 원리와 맥락, 실천 및 활용 방식에 따라 설정
- (내용 요소) 영역별 아이디어에 따라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3가지 범주로 제시 ※ 뒤쪽 내용체계 표 참조

○ 체육과 학년군별 내용 요소 선정 원리

학년군	내용	지식·이해		가치·태도	과정·기능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3~4학년군	개념적 수준		입문을 위한 기초 기술	개인 ↓ 대인 ↓ 사회	인지, 시도, 수용 ↓ 분석, 적용, 실천 ↓ 평가, 구성, 지속
5~6학년군	원리적 수준		참여를 위한 복합 기술		
중학교 1~3학년군	이론적 수준		제도화된 활동을 위한 응용 기술		
고등학교			정식 활동의 심화 및 전문 기술		

□ 체육과 교육과정 목표

-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활동 역량 육성

【 체육과 교육과정 목표(3가지) 】

- ▶ (움직임) 지식 이해하고, 움직임 목적과 환경에 적합하게 움직임 기술 수행하며, 움직임 수행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
- ▶ (건강) 지식을 이해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을 증진 및 관리하며, 건강 증진과 관리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
- ▶ (신체활동) 고유한 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신체활동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누리며, 다양한 문화 양식에 내재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

□ 체육 교과 시간 배당 기준

- 학교급별 체육 시간(고등학교 학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 교과(군)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1~3학년
	즐거움 생활(144)	204	204	272	10(8)학점

※ 초 1~2학년은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144시간 편성 운영

※ 일반·특목고는 10학점, 특성화·산업수요 맞춤형고는 8학점 편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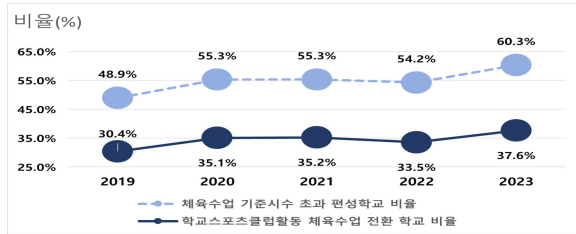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 현황

- ☞ 전국 중학교에서 학생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체육수업을 초과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 체육으로 대체 가능

1)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11] 부분 발췌

- (2022~2023년) 2022년은 '20, '21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2023년은 37.6%로 전년 대비 4.1% 증가

- G교육청은 62.3%로 가장 높고, C교육청은 10.9%로 가장 낮게 전환



[2023년 인천대(박정준교수) 정책연구]

□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 공통 교육과정(초등~중학교)

- 내용 체계 : 운동 영역

범주	구분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지식 · 이해	핵심 아이디어	· 운동은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주요 방법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한 삶의 토대 · 체력은 건강의 기초가 되며, 건강은 신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과 생활 습관을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증진 · 인간은 생활 속에서 운동을 즐기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			
	과정 · 기능	· 운동과 체력 · 기본 체력운동 방법 · 운동과 건강 · 건강한 생활 습관	·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 체력 종류별 운동 방법 · 운동과 성장 발달 · 안전한 생활 습관	· 체력 증진 원리 · 체력 증진 운동 특성/활동 방법 · 체력 관리 원리 · 체력 관리 운동 특성/활동 방법 · 운동처방 원리/방법	· 신체 건강 · 정신 건강 · 특성/활동 · 사회적 건강 · 특성/활동
가치 · 태도	과정 · 기능	· 운동과 체력 관계 파악 · 기본 체력 운동 시도 · 운동과 건강 관계 파악 · 건강한 생활 습관 시도 · 안전하게 활동	·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의 의미와 요소 파악 · 체력 측정과 다양한 운동 시도 · 운동과 성장 발달 관계 파악 · 운동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방법 탐색하며 대처 · 안전하게 활동	· 체력 운동 원리 분석 · 체력 요소별 운동 방법 적용 · 건강 활동 특성 분석 · 건강 활동 방법 실천 · 안전하게 활동	
	가치 · 태도	· 긍정적인 신체 인식 · 운동 및 건강에 관한 관심 · 운동 및 건강 습관 실천 의지	· 체력 운동 참여의 근면성 · 체력 증진을 위한 끈기 · 성장 발달의 차이 공감 · 안전사고에서의 침착성	· 체력 문제 해결 의지 · 운동 실천의 자기 주도성 · 자율적인 건강 추구 ·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안전의식	

- 내용 체계 : 스포츠 영역

범주	구분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지식 · 이해	핵심 아이디어	· 스포츠는 인간이 제도화된 규범과 움직임 기술을 바탕으로 타인 및 주변 세계와 소통하며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 · 스포츠는 환경과 상호 작용하고 다양한 기술과 창의적인 전략을 발휘하며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달 · 인간은 스포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함으로써 움직임의 즐거움을 느끼고 활동적인 삶의 태도를 배움		
	과정 · 기능	· 스포츠와 움직임 기술 · 기본 움직임 기술의 종류와 수행 방법 · 스포츠에서의 기본 움직임 기술 수행 방법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유형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 방법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활동 방법과 기본 전략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역사와 특성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경기 기능과 수행 원리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경기 방법과 전략
가치 · 태도	과정 · 기능	· 스포츠 의미와 유형 이해 · 기본 움직임 기술과 스포츠 관계 파악 · 기본 움직임 기술의 종류 파악하고 시도 · 스포츠 유형별 움직임 기술 종류 파악 · 스포츠 유형별 움직임 기술 시도 · 안전하게 움직이기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유형 파악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 방법 활용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기본 전략 적용 · 안전하게 활동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유형별 역사와 특성 비교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유형별 수행 원리를 경기 기능에 적용 · 기술형 · 전략형 · 생태형 스포츠 유형별 경기 방법과 전략을 경기에 활용 · 안전하게 경기
	가치 · 태도	· 움직임 수행 자신감과 적극성 · 최선을 다하는 태도 · 게임 규칙 준수 · 스포츠 환경에 대한 개방성 · 스포츠 활동 참여 적극성	· 목표 달성 의지 · 상대 기술 인정 · 팀원과 협력 · 구성원 배려 · 스포츠 환경을 아끼는 태도 · 스포츠 환경에 감사하는 태도	· 경기 수련에 대한 내내심 · 도전적 경기 태도 · 팀워크와 신뢰 · 페어플레이 · 스포츠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체 의식 · 스포츠 환경에 친화적인 태도

- 내용 체계 : 표현 영역

범주	구분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지식 · 이해	핵심 아이디어	· 표현 활동은 인간이 신체 움직임에 생각과 감정을 담아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예술적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 · 표현 활동은 기본 움직임에 표현 원리가 적용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구현되며, 구성 및 창작의 과정을 통해 발달 · 다양한 표현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움직임의 심미적 가치를 내면화하며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 터득		
	과정 · 기능	· 표현 활동과 움직임 기술 · 기본 움직임 기술의 표현 방법	· 표현 활동 유형 · 표현 활동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 방법 · 표현 활동 유형별 움직임 기술 구성	· 표현 활동의 역사와 특성 · 표현 활동의 동작과 표현 원리 · 표현 활동의 창작과 감상
가치 · 태도	과정 · 기능	· 표현 활동의 움직임 기술 파악하고 시도 ·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임 기술 표현	· 표현 활동의 유형 파악 ·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 방법 활용 ·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구성하고 발표	· 표현 활동의 유형별 역사와 특성 비교 · 표현 활동의 유형별 동작 표현 ·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원리 적용 · 표현 활동의 유형별 작품 창작하고 감상
	가치 · 태도	· 움직임 표현에 대한 호기심 · 움직임 표현에 대한 감수성	· 다양한 표현 활동 유형에 대한 수용적 태도 · 움직임 표현의 심미성 추구	· 표현의 독창성 · 다양한 표현 활동에 대한 개방성 · 예술적 표현에 대한 공감과 비평의식

□ 선택 중심 교육과정(고등학교)

- 고등학교 체육과 선택과목은 일반·진로·융합 선택 유형별로 구성

【 고등학교 체육과 선택과목 】

구 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명	체육1 체육2	운동과 건강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스포츠 생활1 스포츠 생활2

- 특수 목적고등학교 선택과목은 체육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편성

【 특목고 체육 계열 선택과목 】

구 분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체육 계열	· 스포츠 개론 · 육상 · 체조 · 수상 스포츠 · 기초/심화/고급 체육 전공 실기 · 스포츠 경기 체력 · 스포츠 경기 기술 · 스포츠 경기 분석	· 스포츠 교육 · 스포츠 생리학 · 스포츠 행정 및 경영

□ 효과적인 다양한 체육수업 운영2)

- 체육과 교육과정 모형의 이해

☞ 학생들의 건강 유지·증진과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체육수업 운영을 위한 이론적 내용에 대한 이해

- 움직임 분석 모형

구 분	주요 내용
개요	· 학생이 하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배우면 다양한 스포츠와 신체활동에서 지속 표현되고, 환경에 따라 변형 적용도 가능
목적	· 학생이 움직임 지식을 이해하고 움직임을 효율적이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기르는 것
교사 역할	· 움직임의 구조와 과학적 원리를 숙지하고 학생 각자의 운동 수행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 · 학생들이 움직임 개념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과정 구성 · 학생들이 다른 교과(과학 등)에서 배운 내용을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 학생들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형태로 개념적 지식과 활용 과제를 제시

- 스포츠 교육 모형

구 분	주요 내용
개요	· 학생들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 즐겁고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목적	· 학생이 운동기능을 습득하고, 운동에 관해 많은 것을 이해하면서, 운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지닌 스포츠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유능한(competent)·박식한(literate)·열정적인(enthusiastic) 스포츠인
특징	· ①스포츠 시즌, ②팀 소속, ③축제, ④기록 보존, ⑤공식 경기, ⑥결승 행사
교사 역할	· 스포츠에 관한 기술, 지식, 태도를 지도 · 운동 기술, 경기 전술, 실기, 규칙 매너 등 ·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스포츠활동 제공 ※ 학생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스포츠 종목을 변형하고 수정하여 경기 운영

- 발달 단계 모형

구 분	주요 내용
개요	· 학생들에게 자기 신체와 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며,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뚜렷이 느끼도록 학생 지도
목적	· 체육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육성
교사 역할	· 총체적(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영역) 관점을 가지고, 학생을 전인적으로 성장시키도록 수업을 준비하고 실제 운영 ·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영역 발달이 최대한 촉진되는 학습 환경 조성 · 학생 수준을 고려한 개별 적합한 학습 과제 부여 ·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배우도록 지원

- 개인 의미 추구 모형

구 분	주요 내용
개요	· 신체활동을 통한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 * 기쁨, 즐거움, 만족감 등 감정과 신체 발달 등 목적을 성취
목적	· 전인 발달, 사회적 책임감 육성, 미래지향적 세계시민 의식 고취
교사 역할	· 자신의 의미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학습 기회를 제공 ·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습 환경 조성 · 자기 관리 기술 및 자기 주도적인 태도 발달 지원 · 사회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2) 3판 체육교육과정 총론(유정에 지음) 부분 발췌

- 체력 교육 모형

구 분	주요 내용
개요	· 학생 개개인의 체력 향상에 초점
목적	· 학생들에게 체력 지식 습득, 체력 활동 기술 발달, 체력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체력 향상을 도모
교사 역할	· 활동적인 신체 활동 프로그램 제시 ·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관리 방법 지도 ·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에 필수적인 운동의 중요성 강조 · 체력 검사 프로그램 시행

□ 즐겁고 안전한 체육수업 운영

○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육수업 운영 전략

- 학생의 건강 유지·증진 및 체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신체 활동 극대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미래인재 양성 도모
 - ※ 학교에서 스포츠활동을 배우고 익혀, 성인이 되어서도 선호 스포츠 경기 등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스포츠활동 습관을 체득하여 평생 건강한 삶 유지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수업 전개
 - ※ 밀도 있는 수업 운영을 위해 학생 개별 신체활동 시간을 증대시키고, 이동 및 대기 시간 등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육수업 운영
- 우수한 지역 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 ※ 블록타임 운영 등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경험을 제공

○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수업

- 성별·연령·체력 수준 등을 고려, 맞춤형 수업계획 수립·운영
 - ※ 남·녀 단일반 또는 혼성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체육수업 운영
- 체육활동 참여도와 스포츠활동 선호도 등을 사전 파악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흥미롭고 재밌는 프로그램 적용
-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준비·정리 운동, 체육시설 및 기구 사전 점검 등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
 - ※ 수업 전·후 노후 체육시설 및 위험 기구 등은 주기적 점검과 관리·감독 철저

1-2 체육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

□ 체육 분야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다양화 : 2025년 전면시행(192학점)

- (체육 공동 교육과정 운영) 일반고에서 개설이 어려운 체육계열의 특목고 선택과목을 체육고에서 개설, 인근 학교 학생들도 과정 이수
 - ※ 인천·전남 체육고에서 운영 중
- (선택과목 개설 확대) 학생 요구, 학교 실정,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 다양한 체육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선택과목 개설 확대

□ 2024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예방 및 보충 지도 운영

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예방지도

- (대상 선정) 학기 초, 과목 이수기준(학업성취율 40% 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 이상)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
 - 별도 선정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년도 대상 학업 성취도 반영, 학생 희망, 교과 지도 교사 및 담임교사 추천 등을 활용
- * 교과 교사가 직접 개발 및 교육(지원)청이 개발·보급한 평가 도구, 기초학력 진단 검사(학기 초), 국가수준 평가(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검정고시 등) 기출 도구 등 활용

【 대상학생 선정 방법 사례 】

- ▶ A 고교 : 자기조절 학습검사 결과,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담임 상담 등
- ▶ B 고교 : 반편성 배치고사, 3월 전국 연합 모의고사, 교과 교사 협의

○ (시기·방법) 학기 중,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 방과후 지도, 방과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학습흥미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교과 수업시간에 별도 지도 등 활용
-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학습흥미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등) 운영 시는 가급적 총 보충지도 시수의 25%(20시수 기준 5시수) 이내로 운영 권장

② 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지도

- (대상·시수) 과목 이수기준(학업성취율 40%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이상) 미도달 학생 대상으로 1학점당 5시수 적용(예시: 4학점 과목의 경우 20시수)

○ (시기·방법) 학기 내(방학 포함),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방과 후(방학 중) 대면 지도(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포함), 온라인 콘텐츠(EBS) 수강,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등 활용

- 예방지도 시수의 일부를 보충지도 시수로 인정 가능하며 다만, 실효성 있는 보충 지도를 위하여 가급적 보충지도로 인정하는 예방지도의 최대 시수는 총 보충지도 시수의 50% (20시수 기준 10시수) 이내로 권장(과목별·학생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학생별 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충지도 시 대면지도를 반드시 포함하되, 온라인 콘텐츠, 보충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이수 기준) 총 보충지도 운영 시수(예방지도 연계 시수 포함)의 2/3이상 참여한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인정

【 학생선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기준 안내 】

- ▶ 학생선수 대상 과목 이수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가능
- ▶ 학생선수 경우 과목 이수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기준은 일반학생과 동일하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방법***은 별도 설정 가능
- * e-School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한국교육개발원) 수강 활용 가능

③ 운영 시 유의사항

○ (운영 절차) 학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

- (기본계획 수립) 예방·보충지도 대상자 선정·지도 방법, 이수 기준*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확정

* 보충지도는 총 운영 시수의 2/3이상 참여할 시에 이수 인정

- (방과후·방학중 지도) 예방·보충지도의 방과후·방학중 지도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6호)

- (이수 인정 여부) 보충지도 참여 학생의 이수 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

○ (안내 시행) 학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사항 학생·학부모안내

- (학기초) 관련 상세 내용*을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예방·보충지도 대상 선정 및 지도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

- (학기말) 대상 학생 및 학부모가 보충지도 이수 대상임을 인지하고 보충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안내

【 2024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개요 】

- ▶ (운영 대상) '24년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 ▶ (운영 과목) '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하여 과목 확대 운영

연구학교	준비학교
○ 1·2학년 대상, 전과목 운영 권장 ※ 교양교과(군) 제외 ○ 연구학교는 별도 안내	○ 1학년 대상, 공통과목 운영 ※ 과학탐구실험 제외 가능 ○ 학교별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

- ▶ (운영 내용) 예방·보충지도 기준 보완 및 예방·보충지도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구분	예방지도	보충지도
이수 대상	○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중 희망자 * 학업성취율 40%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이상	○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 학업성취율 40%이상 및 과목 출석률 2/3이상
이수 시기	○ 학기초 과목별로 대상 학생 선정 → 학기 중 운영	○ 학기말 과목별로 대상 학생 선정 → 학기 내(방학포함) 운영
운영 방법	○ 방과후 지도, 방과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교과 수업시간에 별도 지도 등의 방법 활용 * 학습홈미 및 동기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등 ○ 예방지도·보충지도 운영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예방지도 시수의 일부를 보충지도 시수로 인정 가능함. 다만, 실효성 있는 보충 지도를 위하여 가급적 보충지도로 인정하는 예방지도의 최대 시수는 총 보충지도 시수의 50% (20시수 기준 10시수) 이내로 권장 2.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는 가급적 총 보충지도 시수의 25%(20시수 기준 5시수) 이내로 운영 권장 3. 학생별 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충지도 시 대면지도를 반드시 포함하되, 온라인 콘텐츠, 보충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4. 예방지도·보충지도 연계 시수 인정 범위,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수, 대면 지도 시수 등에 대해서는 과목별·학생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방과후(방학중) 대면지도(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포함), 온라인 콘텐츠(EBS) 수강, 보충과제 부여, 학습멘토링 등의 방법 활용 ⇒ 1학점당 5시수 (예 : 4학점 과목 20시수)
운영 절차 및 이수 인정	○ 예방·보충지도 대상자 선정 및 지도 방법, 이수 기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 * 보충지도는 총 운영 시수의 2/3이상 참여할 시에 이수 인정 ○ 예방·보충지도의 방과후·방학중 지도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6호) ○ 보충지도 참여 학생의 이수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	

- ▶ (기타) 4세대 NEIS에 변동 분할점수 산출 프로그램이 탑재('24.3.~)됨에 따라 연구 학교에서는 변동 분할점수 산정 시 NEIS 관련 기능 활용

2 학생 체육활동 일상화

2-1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

□ 온라인 체육교실 앱(메타스포츠 스쿨) 활용

- 교사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적인 운동 실천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체육교실 앱' 보급 운영

* (메타스포츠 스쿨) 운동 유형별 수행 기록·누적 관리, 자신의 아바타 업그레이드, 교사의 과제 제시·확인·피드백·순위 확인 제공, 모둠활동 지원 기능 지원 앱
 ※ 핸드폰 사양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검색·설치 후 운영
 ※ 교사가 체육수업에 활용하거나, 학생이 개별 체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온라인 튜터링 콘텐츠 활용

- 체육활동을 위한 수준별·주제별 영상 콘텐츠 148종 개발·보급, 체육수업, 틈새 운동, 학생 개별 신체활동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 (답재) EBS 온라인학습터, 에듀넷, 학교체육포털(<https://cspep.or.kr>)
- (내용) 초급⁵⁰(놀이형), 중급⁴⁸(게임형), 고급⁵⁰(스포츠형) 148종 영상

2-2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 내실화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개요

-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는 학생 건강체력 중심의 평가 및 운동처방으로 신체활동 증진 및 건강체력 관리 제도
- (근거)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건강검사 등),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2항(건강검사의 실시 : 신체의 능력)

- (측정 대상) 초5(초4 선택) ~ 고3
- (측정 종목)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체지방
- (측정 시기) 매년 학년 초 실시하는 것을 원칙(1학기 내 완료)
- PAPS 측정 결과 제출(교육청→교육부) : 매년 11. 30.까지 전송 완료
- (단위학교) 1학기 내에 팝스 측정을 완료하고, 이 결과를 나이스에 입력하여 매년 11월 중순까지 교육청으로 전송처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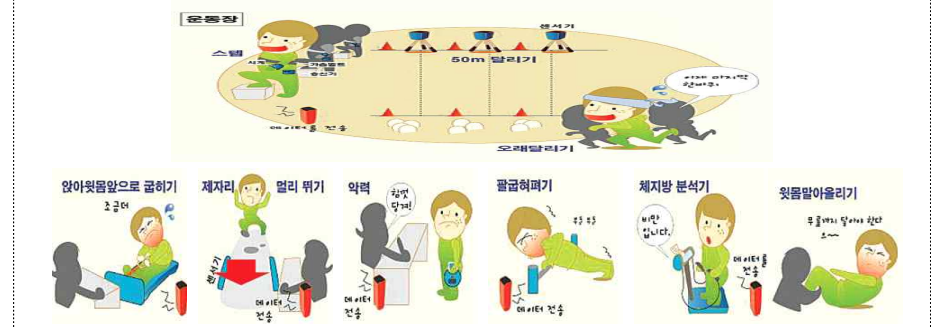
☞ 나이스 경로 안내

[PAPS]-[통계 및 현황]-[PAPS통계/제출]-2024학년도 설정-[통계조회]-[통계생성]-[승인요청 : 기안문 작성]-[제출 : 교육청 전송]

※ 모든 학급 측정마감 후 통계 생성하고 결제 완료되어야 교육청 전송 버튼 활성화

- (교육청) 관할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전송이 완료되면, **매년 11.30.까지 교육부로 전송처리 완료**

【 PAPS 측정종목 종류(예시) 】



□ 2026년까지 국민(학령기~성인) 체력 평가 기반 조성

- (2024년 팝스 운영) 현행 측정 방식대로 운영하되, 2025년 초4 의무 시행 대비, 학교에서 초4 측정 후 나이스에 결과 입력하여 자체 점검 실시
 ※ 2025년에도 초등학교에서 초3 대상 측정 후 나이스에 결과 입력하고 자체 점검
- (나이스 고도화 조치) 2026년부터 초3~고3 의무 시행을 위해 2025년까지 나이스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
 ※ 팝스 측정관련 나이스 고도화 조치 등이 완료되면 추후 시도교육청에 안내 예정

- (측정 종목 일원화) 학생 PAPS와 성인 '국민체력100'의 측정 종목을 점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전 생애 걸쳐 체력 관리 기반 조성
- 학교급별 측정 종목은 '24~25년 시범 운영을 거쳐 '26년 최종 선정·시행

구 분		현 행	변 경(안)
건강체력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 (초 15m, 중·고 20m), 오래달리기-걷기, 스텝검사	왕복오래달리기 (초·중·고 20m)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중합유연성검사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근력	악력	악력
운동체력	근지구력	윗몸말아올리기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윗몸말아올리기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5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스피드		50m달리기
신체조성	체지방	체질량지수(BMI), 체지방량	체질량지수(BMI)

- (적용 대상 확대) 기존 초5~고3까지의 팝스(PAPS) 측정 대상을 초3·4 시범 적용을 거쳐 2026년부터 초3~고3까지 확대 적용 시행
- ※ ('24) 초4 시범 → ('25) 초4 시행(초3 시범) → ('26) 초3~고3 시행 → ('27~'28) 초2~1 시범
- '27, '28년에 걸쳐 초 1·2학년 시범 적용 후 전면 시행 여부 결정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적용 대상 확대	초4(시범)	초3(시범) 초4 시행	초3 시행	초2(시범)	초1(시범)
측정 종목 일원화	사전 예고	시범 적용	시행		

□ 학생 건강체력교실 운영 의무화

- (법적 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모든 학교에서는 저체력(팝스 4·5등급) 또는 비만 판정 학생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의무적 수립 시행
 -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 (참여 범위 확대) 기존 팝스(PAPS) 4·5등급 학생뿐만 아니라, 비만 학생 및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센터가 주관하는 '국민체력100' 사업의 체력증진교실(대면·비대면)을 통해서도 학생 참여 가능
- ※ [대상 확대] : (현행) PAPS 4·5등급 → (확대) PAPS 4·5등급, 비만 학생·희망자

- (e-paps 앱 보급)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은 개인별 운동처방 제공, 교사 업무경감(계획서 등), 늘봄학교에서 활용 등이 가능토록 개발
- 팝스 등급별 개별 운동처방, 90여종 동작, AI 동작인식 운동자세 분석, 실시간 피드백, 운동 달성률, 랭킹시스템 적용 등 제공

【 e-paps 앱 기능별 화면 】



- ※ [PAPS 4·5등급 비율] : ('21) 17.7% → ('22) 16.6% → ('23) 00% → ('24) 16% 예정
- (상시 운영) 학생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흥미와 요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체력교실 효과 및 만족도 제고
-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체력교실 활동 학생 참여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운영
- ※ (부산·충북·충남·경북) 스피닝 교실, 필라테스, 힙합댄스(여학생 특화) 운영 등

2-3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틈새 운동

□ 틈새 운동 전국 확산

- (틈새 운동 확산) 체육활동이 일상화되도록 아침 등 틈새 시간*을 통해 규칙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 * [운영 예시] (아침 시간) 학교 여건에 따라 희망 학생 참여 / (창체 및 점심 시간) 1교사 1동아리 운영 등 / 방과후 : 자율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연계
- ※ ('23) 5,677교 → ('24) 9,000교 → ('25) 모든 학교
- (교육청)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 추가 투입 등을 통해 각급학교에서 틈새 운동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단위학교) 교육청 계획 및 지침 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내실 있게 운영

- (프로그램 활용) 온라인 튜터링 콘텐츠(148종), 메타스포츠 스퀘 및 e-paps 앱, (초등)팍스체조 등 가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체육활동 일상화 운영 사례】

- ▶ (서울 '시즌2 다시 뛰는 아침')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1학생 1스포츠클럽 추진, 저체력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 운영, 학생주도적 자율 체육 지원을 통한 건강 회복
- ▶ (부산 '아침 체인지(體仁智)') 학교 여건에 따라 전교생 또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장·체육관에서 '자기주도형 체육동아리 활동', '개인 및 단체 스포츠' 등 체육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체력 향상 및 인성·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
- ▶ (충북 '어디서나 운동장') 몸(신체)활동을 생활하여 언제 어디서나 움직임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포(4)유* 및 무빙 릴레이** 프로그램 운영

* 함께해유·움직여유·건강해유·성장해유 ** 무빙 활동 SNS 탑재 후 다음 사람 지목

2-4 대외 협력을 통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 무브 스포츠(MOVE SPORT)를 통한 각급학교 지원

- (무브 스포츠란?) 각급학교에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교구·교보재, 교사연수 등을 무상 제공·지원, 학생 체력 증진 위한 교육기부 사업
- ※ (현황) 2014~2023년까지 대상스포츠재단에서 지원받은 학교 1,881교, 학생 282,670명
- (사업 기간) 2024. 3 ~ 12월 ※ 신청 공문 시행(2024.3.11.)
- (주최·주관) 재단법인 대상트스포츠재단
- (참여 대상) 초 200교, 중·고 200교 총 400교 예정 ※ 2023년 400교 76,500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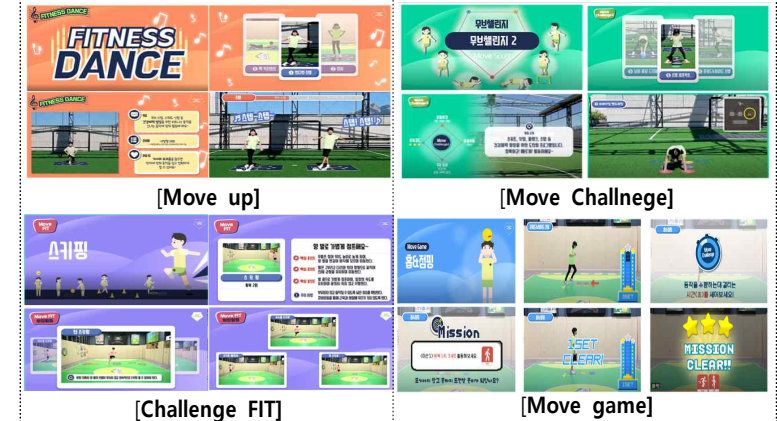
【학교급별 무브 스포츠 운영 현황(단위 : 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초	20	10	10	10	10	10	10	10	20
중·고	40	10	10	10	5	5	5	10	5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10	20	10	10	10	10	10	10	200
중·고	10	5	5	10	5	10	5	5	200

- (지원 내용) 교구·교보재, 교육지원, 교사 연수 등 전부 무상 제공 및 지원
- (교구 및 교보재) 교구(전용매트·부저·조끼(2종) 각 28개), 교보재(교사용 매뉴얼북·학생용 워크시트), 영상 교육자료*(음원 2종, 동영상 30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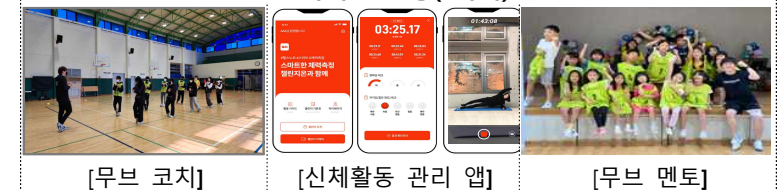
* [Move up] 음악과 함께하는 리듬형 프로그램, [Challenge FIT] 무브챌린지 활동을 위한 기본 동작 교육프로그램, [Challenge FIT] 무브챌린지 활동을 위한 기본 동작 교육 프로그램, [Move game] 무브챌린지 동작을 활용한 동기 부여와 즐거움을 위한 놀이 활동

【영상 교육자료】



- (교육지원) 무브 코치를 학교에 배치 운용, 온라인 신체활동 관리 앱 개발·보급 활용, 무브 멘토(대학생이 초등학생 활동 멘토링) 지원

【교육지원 현황(3가지)】



○ 교사 연수 운영

- (운영 대상) 무브스포츠 운영학교 소속 교사(스포츠 강사 등 포함)
- (일정/방식) 2024. 4~5월 예정 / 서울·부산·세종에서 집합 연수
- (운영 내용) 무브스포츠 사업 안내, 무브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활동 적용 방법, 신체활동 지도 역량 강화 교육 연수

【무브스포츠 안내 포스터 및 랜선 대회】



□ [문체부 협업] 2024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 운영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4년 상·하반기 30주간 운영
- (장소/규모)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1,400교**
※ ('23년) 2,000교 → ('24년) 1,400교, 전년 대비 600교 감소

【 시도별 운영학교 현황(단위 : 교)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학교	112	110	99	62	41	54	42	23	128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교	81	60	91	101	139	112	111	34	1,400

- (강사 지원) 프로그램별 강사 1명(주말 중 1일 2시간 운영)
- (참가비) 무료
- (프로그램) 학교별 1개 종목 운영
※ 여학생 프로그램, 농산어촌 지역 운영 프로그램, 수준별 프로그램 우선 선정 권고
※ 2024년부터는 학교 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종목 선정 시, 해당 학교에서 육성하는 학교운동부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 가능(주관단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사업주관) 시·도(시·군·구)체육회
- 강사 교육
 - (인원/방법) 학교 안 1,400명(학교 밖 1,105명) / 온라인 학습포털
 - (주요내용)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 지도방법 등 교육
- 보험 가입 : 시도체육회에서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 교육청 및 단위학교 협조사항
 - (교육청) 교육부에서 안내된 공문을 교육지원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단위학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참가 학생 수요조사를 거쳐 해당지역 체육회에 프로그램 운영 신청

2-5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 운영 개요

- (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 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평가)
- 상기 법규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
- (방향) 여학생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신체활동 가치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체육활동 환경 조성과 여학생 선호 종목 선정 등을 통한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추진
- (운영) 기존 스포츠 종목의 경기규칙 변경·적용과 용·기구 등을 변형하여 신체활동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재밌는 프로그램 운영

【여학생 특성을 고려한 수업 운영(예시)】

- ▶ (초등학교) 양성평등 관점에서 종목 선정 및 수업 운영
- ▶ (선호종목) 남녀 신체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여학생 선호*종목 선택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여학생 감성을 자극하고 참여가 용이한 종목을 수업에서 운영
* 방송댄스, 넷볼, 킨볼, 치어리딩, 요가, 줄넘기, 배드민턴, 탁구 등
- ▶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남녀를 구분하거나, 혼성으로 수업 운영이 가능한 종목 등을 선택하여 흥미롭고 즐거운 체육수업이 되도록 운영

□ 기관별 역할

- (단위학교) 학교급별과 신체 발달단계별 특성을 반영·고려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매년 의무적 수립·시행
- 여학교는 5종목, 남녀공학은 2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교내 리그,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운영, 탈의실 정비 등 여건 조성
- (시도교육청)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 수립하여 각급학교 안내,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컨설팅, 예산지원 등 후속조치
-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5종목 이상 운영, 스포츠캠프, 여학생 감성과 흥미 유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3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3-1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1인 1스포츠)

□ 단위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

- 학교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여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
 - ※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 운영
 -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 ('22년) 128,602팀, 3,123,535명 → ('23년) 139,900팀, 3,356,550명
- (전담교사 지정) 단위학교에서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전담교사 지정하여 운영
 -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
 - * 학교스포츠클럽 업무를 총괄·기획하는 전담교사에게 업무담당 수당으로 지급 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 (단위학교) 담당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역을 가급적 바로 나이스에 입력, 이 결과를 매년 12월초까지 교육청으로 전송 완료
 - (학교스포츠클럽명 입력) 학생들의 실제 활동 내용이 드러나는 클럽명으로 정하여 입력하거나, 함께 적어 입력 가능
 - ※ 케이팝댄스반, 통기반(피구반), 덩크슛반(농구반) 등
 - (활동 시간) 평일 2시간, 공휴일 4시간, 최소 20분 단위 입력 가능

【 학교급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구 분	초	중	고
교육과정	×	창의적 체험활동	×
방과 후	○	○	○

※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창체 동아리활동에서 매 학기 34~68시간(주당 1~2시간)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역(등록 및 실적 현황) 제출(교육청→교육부) : 매년 12.20.일까지 전송 완료

나이스 경로 안내

[체육]-[학교스포츠클럽 관리]-[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역 관리]

□ 교내(학교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활성화

- (방향) '1학생 1스포츠활동' 실현을 위해 아침·점심,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급단위 또는 수준별 팀단위로 다양한 리그 운영
 - 학교 규모와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종목 이상 운영
 - ※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여학생 특화 종목을 최소 3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학급단위)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단체종목 중심으로 일명 '반대향'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 학급단위 외에도 종목별 팀 편성을 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 적용
 - (일반교사 참여) 스포츠 종목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일반교사가 1종목을 맡아 운영하여 '1교사 1종목' 매칭 운영 확산 권장
- (안전 최우선 확보) 학생이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발생이 없도록 위험 요소 제거, 준비·정리운동, 안전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 철저
- (예산 확보) 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예산을 가급적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체육 시설 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제공
- (학생 주도 자율 운영) 전담교사는 총괄 운영을 관리하고, 학생 주도적으로 경기 진행 및 심판 참여 등을 통해 자율성 신장 도모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 (운영 근거)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운영
 - * [중학교]-[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10]~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편성·운영
 - ※ 방과 후에 운영되는 '교육과정 외 학교스포츠클럽'도 효율적으로 조직하여 함께 운영
- (전담교사 지정·운영) 스포츠강사 관리, 교내 연수 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총괄·기획하는 전담교사 1명을 지정하여 운영
 - (활동비 지원)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자체 예산 확보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 소정의 활동비 지원

- (지역시설 등 이용) 학교 또는 지역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배우는 체험 기회 제공
 - (경기 관람)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스포츠 경기 관람에 참여하므로 경기 규칙 및 심판법 등을 이해하는 기회 제공
 - (사업 예산)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자체 예산 확보 지원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연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 스포츠 강사와 일반교사의 지도 능력 및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 (주체/시기) 시도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 매년 3~7월
 - (대상) 스포츠강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일반)교사
 - ※ 중학교 스포츠 강사료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시간당 3.5~4만원* 권장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규정 준용 : 보조강사 4만원
 - (예산)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자체 예산 확보 지원
 - (내용)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이해·지도의 실제, 안전사고 예방, 인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수업지도(종목별) 역량 강화 등
- [중요] 시도교육청 협조 사항
 - (예산 지원) 단위학교 수요조사 등을 거쳐 중학교 창·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 강사 채용' 예산을 교육청에서 확보·지원
 - (교원 업무경감) 일반교사가 중학교 창·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에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수업 운영 도모
 - (강사 마약검사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따라, 채용 전 마약검사 결과 확인 후 계약체결

【 2024년 중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예산지원 현황(단위 : 백만원,교)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예산액	9,432	3,372	3,570	-	1,572	1,685	1,185	-	3,060
학교 수	390	170	124	143	91	89	64	27	66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예산액	1,590	2,100	1,400	800	978	2,700	857	1,053	35,354
학교 수	160	128	185	211	250	261	266	45	3,265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활성화

- (운영 대상) 초·중·고 학생
- (상시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1, 2학기 중 또는 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방학 중에 운영,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운영 방식 다양화) 학년별, 남·녀·혼성별, 종목별, 사제동행 등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여 많은 학생 참여 유도
- (소규모 학교 리그 참여) 학생 수가 적어 참여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참여를 위해 해당 교육(지원)청별에서는
 - 다양하고 특색 있는 리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참여 유도
 - ※ 단일교팀으로 리그 참가가 어려운 학교는 별도 리그를 운영하는 등 참여 기회 제공
 - ※ (현장 요구) 제11차 함께차담회에서 참석 교사 제안('24.2.15.)
- (예산 운용)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지원)청 예산 등으로 집행
 - (단위학교) 리그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교통비, 식사비 등 소요 경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원활한 리그 참가가 되도록 추진
- (전환기 참여 활성화) 중3, 고3 학생들이 입시 이후, 스트레스 및 심신 피로 해소, 체력 향상 등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유도
 - 상급학교 진학 전 중3, 고3 학생 대상으로 선호 종목을 선정하여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대회 등을 운영하여 부족한 신체활동 충족
 - 현행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모델링 후 보급·안내하여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다채롭게 운영
 - ※ [충북교육청] : 매년 수능 이후 고3 대상 축구·농구 종목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 (운영 방향) 교내리그와 교육(지원)청 리그를 거치거나, 시도 선발 등을 통해 참가하며, 스포츠를 통해 교육적 가치를 배우는 기회 제공
 - ※ 교내리그 ⇨ 교육지원청리그 ⇨ 교육청 리그 또는 선발(토너먼트) ⇨ 전국 축전
 - ※ 리그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체력 향상 등 도모

- (스포츠정신 교육) 상대를 존중하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명正大하고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체득
- (대표자 회의* 개최) 경기 전 주요 경기규칙 안내, 경기 심판 운영, 특이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 진행
 - * 주관교육청과 종목경기단체가 대회 전, 참가학교 대표자 대상으로 주요사항 사전 공지
 - ※ 경기 과열로 인한 학교관계자학부모 등의 항의 자제를 위해 사전 공지 및 협조 요청
- (종목경기단체) 주관교육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 원활한 경기 진행과 교육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심판 운영에 중점
 - ※ 경기 심판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정하되, 항의 시 충분한 설명 등 친절한 안내
- (문화 체험 등) 스포츠 경기 참여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행사 경험과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을 통한 정보 교류 등 유익한 체험
- (운영 종목) 18개 종목 예정 ※ (미정) 플라이 디스크
 - 학생들이 선호하고,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엄선, 학교스포츠클럽운영지원단(장학관 등)에서 선정 후 개최 추진

<2024년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종목(안)>

구분	주관	(‘24년) 제17회	(‘23년) 제16회
1	서울	치어리딩	치어리딩
2	부산	연식야구	연식야구
3	대구	티볼	티볼
4	인천	줄넘기	줄넘기
5	광주	배구	킨볼
6	대전	넛볼	넛볼
7	울산	축구	-
8	세종	-	-
9	경기	피구	축구, 풋살
10	강원	-	배구
11	충북	풋살	피구
12	충남	족구	족구
13	전북	탁구	스포츠스태킹
14	전남	-	플라이디스크
15	경북	농구	농구
16	경남	배드민턴	배드민턴
17	제주	킨볼	탁구
18	학교체육진흥회	플로어볼, 육상, 스포츠스태킹	플로어볼, 육상
계		18 종목	

3-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식 다양화

□ 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대회 확대

- (참여 기회 확대)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혼합팀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참여 기회 제공
 - * (‘23년) 전국대회 신설(농구) → (~’28년) 단계적으로 3종목 이상 확대
 - ※ 2023년 문체부 주관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전국대회 개최(17개 종목)
- (운동기능 향상) 운동에 재능 있는 일반학생에게 대회 참가 기회를 확대하여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우수선수 발굴하는 계기 마련
 - ※ 일반학생 중 운동에 재능이 있어 학생선수로 성장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동부 소속으로 활동하거나, 지역 스포츠클럽 등에 등록하여 개별활동 참여 가능

□ 2024년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대회 개최(안)

- (대회 명칭) 제2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대회
- (참가 종별) 초등·중학부(남, 여)
- (팀 구성)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로 구성된 혼합팀
- (개최 종목) 농구, 1개 종목 미정 총 2종목 예정
 - ※ 2023년 농구 종목 개최하여 39팀(초등 16팀(남 7, 여 9), 중 23팀(남 13, 여 10)) 468명(초등 192명(남 84, 여 108), 중 276명(남 156, 여 120)) 참가
 - ※ 강원·전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참가
- (개최 일정) 미정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최/주관) 교육부 /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
 -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2)
- (시상 계획) 종별 입상 순위별 및 페어플레이상
 - ※ 대회입상 학교(팀) 시상은 1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2·3위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상, 페어플레이상은 4개 종별팀에게 경기단체장상으로 수여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전국대회에 많은 학교(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 및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

4 학교운동부 운영 체계화

4-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학생선수 및 최저학력제 정의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4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
 - ※ 체육특기자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시에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배정 받은 학생(선수)
 - ※ [학기초]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소속 외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 파악·관리
- (최저학력제)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학력 기준에 도달 여부를 학기별 확인, 미도달자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제공·이수 및 출전 제한
 -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경기대회 제한[(1학기) 9.1~익년 2월말일, (2학기) 3.1~8.31]

□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 (기본원칙)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
 - * 교과 및 창·체 등 수업,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
- (교외 훈련) 교내 훈련 장소가 없고, 안전상 야간 훈련이 어려운 종목으로 상시적 정규수업 이수 불가능할 때는,
 - 안전대책 수립과 보충학습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해진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
- (보충학습) 학생선수가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충학습 제공 후 의무 이수
 - (이수 기준) 1일 2시간 이하 수업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하여 1일 최대 2시간 의무 수강
 - ※ (기존) 1시간 결손 → 1시간 수강(1일 최대 6시간)
 - ※ (변경) 1 또는 2시간 결손 →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 → 2시간 수강(1일 최대 2시간)
 - ※ 상기 내용은 e-School 수강 시 적용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대면수업 등 실시 가능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준수

- (운영 방향) 학생선수는 정규 수업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대회·훈련 참가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 처리 허가 가능
 - ※ 정해진 허용일수에 대한 허가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후 허가 가능
-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 (출결처리 기준) 대회·훈련 참가를 위해 지각·조퇴·결과 조치 후 수업결손 누적 시수가 6시간이면 1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
 - ※ 담당교사는 학생선수 출결처리가 누가기록 되도록 나이스 입력 및 관리 철저
- (적용 예외 사항) 학생선수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 참가 및 이를 준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와
 -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는 허용일수 적용에서 제외
- (국가대표 위탁교육) 국제대회 참가 등을 위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진천선수촌 등)에 참가할 경우에는
 - 훈련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환)교육을 통해 학생선수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및 학습 여건 조성 지원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출결상황-위탁학생 출결처리 방법-국내교환학습]

□ 학생선수 출결 관리 등을 위한 학교장 확인서 발급

- (추진 경과) 2017년부터 교육부·문체부(대한체육회) 협의하여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시에 '학교장 확인서'를 종목별 경기단체에 의무 제출
 - ※ 경기단체에서는 학교장 확인서 미제출 시, 학생선수(팀) 대회 참가 불허
- (주요 내용) 학생선수 출결 관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일수*를 누가 기록·관리하고,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확인
 -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 ※ (기관별 역할) 학교는 최적학력제 적용 및 허용일수 확인하여 경기단체에 제출하고, 경기단체는 학교장 확인서 필수 접수하여 참가 승인

□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개요

- (관련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적용대상) 초(4~6학년) · 중 · 고 학생선수
- (시행일자) 2024. 3. 24. ※ 개정 법규 적용
- (적용과목) 초·중학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고등학교 : 국어, 영어, 사회(3과목)
※ 고등학교는 영어, 사회를 수학, 과학(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 (적용기준)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
-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연 2회 실시
- (성적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부터 적용
 -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였을 경우, '24.9.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 초·중학생은 대회 참가 제한,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학교장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 등) 운영 및 참여 의무화
※ 초·중학생은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하여도 참가 제한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관련 주요 내용 】

- (사전안내) 학년 초에 최저학력제 적용과목을 선정하고 이를 학생선수에게 안내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실시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위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다음 학기에는 최저학력제 미적용
※ (예시)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 경우,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제 미적용
- (고등학교)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 사회 ⇨ 수학, 과학으로 대체 가능하며, 특성화 고등학교도 영어는 수학으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 (교과 대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시도교육청,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 검토 예정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및 기초학력 보장

- 학교장은 학기별 기말고사(지필고사+수행평가) 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파악
 -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후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은 내부결재 처리 등의 적의 조치
- 학생선수가 상급학교에 진학 후, 졸업한 학교로 직전학년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원활하게 업무처리
 -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과목별 최저학력 도달 여부

【 최저학력 및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관리 】

학년-반	이름	종목	최저학력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도달 여부	미도달 과목 수	이수 여부	이수 시간
0-0	○○○	00	도달	-	-	-
0-0	△△△	00	미도달	3	이수	36(초,중) 60(고)

- ※ 최저학력에 미도달 할 경우, 초·중학교(5교과)는 교과별 12시간, 고등학교(3교과)는 교과별 20시간 운영 및 이수 의무화(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 해당과목(초·중 5교과, 고 3교과) 전체가 미도달 되면 총 60시간 이수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관별 책무성 강조

- (단위학교)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여부와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대회·훈련 참가 승인
- (경기단체) 각종 대회 등을 개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중앙·지역)에서는 '학교장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접수
-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 관리·감독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e-School 시스템 운영

- e-School 시스템 운영 개요
 - (개념)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해 발생 되는 수업 결손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 (대상) 초·중·고 학생선수

※ 학생선수 활동을 중단하고 일반학생으로 전환한 학생도 본인 희망 시 수강 가능

- (운영 강좌) 초등학교 교과(14개)와 과목(22개), 중학교 교과(38개)와 과목(76개), 고등학교 교과(69개)와 과목(138개), 특화콘텐츠*(5종)

* 학생선수 진로 강좌, 스포츠 세계문화·진로학습·인문과학·인권교육

○ e-School 시스템 다양한 운영 방식

- (상시 학습) 학기 초부터 학생선수가 꾸준히 학습에 참여하여 공부 습관 형성과 학업에 관한 관심 유도를 통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분위기 조성
- (보충 학습) 대회 및 훈련 참가로 발생하는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학습을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키고, 학습권 보장 도모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 run-up 과정)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에게 방학 중 의무 이수 학습량을 제공하고, 이수 여부 확인

○ e-School 운영 기간

구 분	운영 기간
1학기	2024. 3. 14.(목) ~ 8. 5.(월)
여름 방학(Run-up)	2024. 7. 17.(수) ~ 9. 3.(화)
2학기	2024. 8. 21.(수) ~ 2025. 1. 14.(화)
겨울 방학(Run-up)	2024. 12. 26.(목) ~ 2025. 2. 21.(금)

○ e-School 수강 운영 시간

- (대리수강 방지) 학생선수가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 실제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학습노트 작성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수강

구 분		운영 시간	
		1·2학기	방학 중(Run-up)
평일	아침시간	06:00 ~ 09:00	06:00 ~ 익일 02:00
	점심시간	11:30 ~ 13:30	
	오후 및 저녁시간	15:00 ~ 02:00	
주말 및 공휴일		06:00 ~ 익일 02:00	

※ 초등은 학기와 방학 중에 야간 10시까지만 운영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각급학교 관리·감독 강화

- (현장 점검) 단위학교 장학지도 및 컨설팅 시에 학생선수 수업 결손 발생과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른 학습 기회 제공 점검·확인
- 학생선수에게 ①보충학습과 ②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의 조치

4-2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법적 의무 교육

- 교육청 또는 각급학교에서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법적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이수 여부 점검

교육(연수)명	대상	교육 시간	법적 근거
(성)폭력 예방교육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기 1회(연2회) (1시간 이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3
도핑방지 교육	"	연 1회 이상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1시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 (체육지도자 재교육)	학교운동부지도자	격년제(6시간)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휴식권 보장

○ 학생선수 상시 합숙훈련 금지

-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안전대책 수립과 안정적 생활, 학습 여건 등을 완비하여 운영
 - ※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원칙으로 원거리 통학 사유가 발생할 수 없어 기숙사 운영 불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기숙사 전담 교직원 근무
 - ※ 여학생 학생선수 기숙사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여성 교직원 근무
- 학생선수의 통학거리(대중교통 이용 1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 제공과 훈련을 위한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 불가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휴식권 보장

- (훈련 시간) 학생선수 체력 수준, 운동 여건 및 종목별 특성, 운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간 동안 훈련하고 과도한 훈련은 지양
- (휴식 보장)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훈련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회 참가 후에는 최소 1일의 훈련 없는 휴식을 보장
- (학교운동부지도자 휴식) 주 52시간 시행('19.7.1.)에 따라, 주말과 야간에 과도한 학생선수 지도는 지양하고, 휴식 여건 조성
 - ※ 학생선수가 방과 후 운동 참여를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대를 학교 여건에 맞게 적절히 정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

□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혹서(한)기 훈련 안전대책 수립 추진

- (기후 변화 고려 훈련) 학생선수가 안전 확보를 위해 기온 등 기후 변화를 사전에 확인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훈련
- (혹서기) 폭염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 주의보 : 1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보 : 1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혹한기) 한파 특보 발령 시 야외 체육활동 자제(주의보) 및 금지(경보)
 - 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거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거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 학생선수 보호 안전대책 】

- ▶ 기온을 고려하여 가급적 실내 활용하되, 여건에 따라 선택적 운영
- ▶ 학생선수가 혹서(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훈련시간 조절
- ▶ 체육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후 사용
- ▶ 위험요소 사전 제거, 충분한 영양 보충 및 수분 섭취 조치
- ▶ 학생선수 개인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제공
- ▶ 훈련 및 대회 참가 전후 학생선수 건강 상태 확인을 통해 참가여부 결정
- ▶ 과도하고 무리한 훈련 진행 금지 및 입장 지도와 관리 감독 철저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도핑방지교육 의무화

- (법적 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도핑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
- (운영 방향) 2024년 도핑방지규정 변경사항*에 맞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맞춤형 콘텐츠를 통한 도핑방지교육 강화
 -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금지목록 개정에 따라, 문체부 고시(24.1.2.시행)
- (교육자료 제공) 금지약물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지원교육 및 제공 콘텐츠 활용 권장
 - (금지약물 검색)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가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강조하여 안내
 - *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or.kr) 내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PC/모바일)



-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활용)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내 연령 및 주제별 맞춤형 교육 영상 활용
 -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온라인교육센터(www.edu.kada.or.kr) 이용 방법



- (전문강사 및 체험형 교육 활용) 교육(지원)청 및 학교운동부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전문 강사와 체험형 교육 활용을 권장

* (지원대상) 교육(지원)청, 체육중·고 신청 시 연 1회 무상교육 지원



체험형 도핑방지교육

- (담당기관)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or.kr) / (문의) 02-2045-9853

□ 2024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교육프로그램 안내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도핑방지교육 활용

구 분(유형)	설 명	사 진	비 고
강의형	- 전문강사의 강의 기반 교육(대면/비대면) - 활동형 프로그램등 대상별 교안 활용		유/무상 지원
체험형	- 퀴즈, VR, 게임 등을 통한 교육 - 20~100명까지 규모에 따른 모듈별 운영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온라인교육사이트 - 주제별, 대상(장애편) 콘텐츠 제공		무료 이용

- 대상 기관별 지원 사항

대상 기관	지원 사항	비 고
교육 (지원)청 및 체육중	· (횟수) 연1회 · (비용) 무상 · (유형) 강의형/체험형	▶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시 도핑방지교육 포함 ▶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운동부 체험형 현장교육 지원 *권역 내 장소 협조 필요(세부내용 별도 안내)
체육고	· (횟수) 연1회 · (비용) 무상 · (유형) 강의형	▶ 가능한 학년별 분반 수업 권장하며, 이에 따른 강사 인원(최대3명) 지원 가능
학교운동부	· (횟수) 연1회 · (비용) 유상 · (유형) 강의형	▶ 학교운동부에서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대상 도핑방지교육 신청 시 교육비용* 발생 * 강사수당 및 행정관리비(세부내용 별도 안내)

※ 지원 기간(~2024.12.13.까지) 내 예산 소진 시 종료

4-3 학교운동부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수립

-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하거나, 학교 교육 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행
- (주요 내용)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현황,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확보·집행,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e-School, 최저학력제 등), 인권 보호
- 전지훈련·대회 참가, 법적 의무 교육 및 연수, 훈련·대회 안전대책, 학부모 부담금 회계처리 절차 등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2호(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운위 심의사항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집행 투명성 제고

- 학부모 후원금(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집행

-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는 반드시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내부결재 후 법인카드로 집행
-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어 관련자 처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제5항 :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

-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및 과도한 책정 금지

- 학교운동부 학부모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부담금을 정하고, 학교에서는 과도한 부담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학부모(회)에게 사전 안내
- ※ 학교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를 책정하고 학부모 부담금이 최소화되도록 계약체결하며, 초등학교는 적용하지 않음을 권장
- ※ [월 부담금] 중 30만원, 고 70만원, [전지훈련] 중 50만원, 고 100만원 초과 지양
- 학교운동부 규모와 학생선수 수, 종목별 특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원 적정화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 한 종목(단체종목 등)에 많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므로 학교별·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원을 적정화하여 운영

- 야구·축구 종목 등에서 **과도한 학부모 부담금**(월 100만원 이상) 책정으로 경제적 많은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 빈발
- 특히, 방학 중 장기간의 전지훈련에 드는 경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훈련기간과 경비를 최적화**하여 실시
 - ※ [사례] 00고 축구부 겨울 방학 중 제주도 전지훈련 비용 학부모 부담금 240만원, 야구부 해외 전지훈련 비용 학부모 부담금 500만원
- (시도별 기준) 시도교육청에서는 종목별 특성과 학부모 요구 등을 반영하고 **학부모 부담금 시도별 기준**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에 안내
- **대회 참가 및 (해외)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학교운동부의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에 따른 예산 집행 결과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성 확보
 - ※ 서울·인천·울산교육청은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비용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중
 - 시도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시스템 구축 후 각급학교에서 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 예산 집행 결과를 탑재하도록 강조하여 안내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및 관리

- (자격)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만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 ※ ①(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건강운동관리사, ③(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④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노인스포츠지도사
- (검증)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에 지원한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한 검증 절차 준수
 -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에 지원한 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채용기관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검증 실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참고
- (결격 사유) 폭력(성·언어·신체 등) 행사, 인권침해,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선발 제외
 - ※ 과거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의원면직한 경우에도 중대 비위행위로 확인되면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채용에서 제외

- (월 1회)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담임 및 학교운동부 지도 교사, 상담·보건교사 등을 통해 학생선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고민·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의무적 실시
 - 학생선수 교우관계, 경기력 향상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진로·진학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 내용을 누가 기록하여 관리

□ [연 1회 이상] 학교운동부 방문 점검

- (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3항(교육감의 주기적 감독 의무)
- (개요) 학교운동부 관련 법령 준수, 학생선수 교육적 차원의 육성 등을 강조 및 안내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점검 대상)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 ※ 방문 학교에 학교운동부 기숙사가 있으면 점검 병행
- (점검 방법) 점검사항 사전 고지 후 현장 방문 점검
- (점검 기간/기관) 2024. 3~9월 / 시도교육(지원)청
- (결과 보고) **2024. 9. 30.까지 교육부로 공문시행**
 - ※ 교육부에서 점검사항(서식 등) 별도 안내 예정이며, 교육부와 합동 점검도 가능
- (후속 조치) 시도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 보완·개선 권고하고, 해당학교는 충실히 이행 후 조치 결과를 보고
 -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등 인권침해, 학습권 박탈, 금품·향응 수수·횡령, 입시비리, 갑질 등이 확인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처리

【 학교운동부 중점 점검 사항 】

- ▶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 ▶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운위 심의 거쳐 계획수립(내부결재)
- ▶ 학부모부담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회계 편입, 공개 및 개별통보
- ▶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제공·이수 현황
- ▶ e-school 시스템 활용, 학습노트 작성, 학교운동부 훈련일지 작성 및 확인
- ▶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준수 및 보충학습 제공·이수(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 ▶ 해외전지훈련 실시 절차 준수,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법적 의무 교육 실시 여부(폭력, 인권, 도핑 등)
-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표준계약서 작성, 학생선수 월 1회 상담 실시 여부
- ▶ 학교운동부기숙사 운영 현황 및 안전 점검 실시 여부 등

□ 학생선수 전지훈련 관리 철저

- (원칙) 전지훈련은 가급적 자제 및 지양하되, 필요시 방학 기간 중 실시, 해당교육청 절차 준수, 사전·사후 보고, 예산 집행 결과 공개
- 학부모 부담금이 많이 소요되는 해외 전지훈련은 지양
- (학교장) 학부모 동의, 학부모 부담 경비 최소화, 학교폭력 예방, 안전 확보,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관할 교육청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 등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12호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사전답사) 전지훈련 전 학교관계자가 숙소와 훈련장 확인·점검
- ※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용
- 학교운동부 전지훈련 세부 절차 ※ 시도교육청 별도 절차 마련 가능

단계	내 용	담당 기관(담당자)	비 고
1	전지훈련 계획서 제출	기관(담당자) → 학교	- 개별 학부모 동의서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 실시 여부 결정
3	사전 보고 및 참가 현황 공개	학교 → 교육청	- 1개월 전까지 -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4	사전답사	학교	- 숙소 및 훈련장 등 사전답사
5	전지훈련	기관(인솔책임자)	- 안전사고 예방 유의
6	사후 보고 및 결과공개	기관(담당자) → 학교 → 교육청	- 복귀 후 15일 이내 -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 [사전보고] 전지훈련 1개월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지훈련 계획서 제출(인원, 일정 및 경비 등 포함) ⇨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사후보고] 전지훈련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결과보고서 및 경비 정산서 제출 ⇨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 학생선수 학습지원멘토단 운영 확대

- (운영 방향)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신장과 인성 함양 등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지원멘토단을 운영하여 모델 마련 및 확산 추진
- 시도교육청 단위로 학습지원멘토단을 운영, 각급학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기초학력 신장 지원과 학업 관련 상담 등 제공
- ※ ('23) 시범 운영(3청, 1.1억원) → ('24) 전면 시행(17청 10.2억원)

- (운영 방안) 학교와 멘토-멘티 구성·선정, 멘토링 내용·방법, 운영 시기 등을 고려하여 모형 적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운영 모델 개발·확산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학부모 인식 제고와 의식 전환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
- (멘토단 역량 강화) 학교운동부 담당교사가 참여하는 학습지원멘토단 구성, 학생선수 학습지도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 후 멘토링 실시
- ※ '학생선수의 이해', '학생선수의 진로', '스포츠 진로와 학습' 등 온오프라인 연수 실시
- ※ '중앙교육연수원'(www.neto.go.kr) 원격연수과정, '학교체육 진흥회'(www.cspep.or.kr)
- ※ 2023년 학습지원멘토 참여 교사 현황 : 107명

□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원체계 구축 확대

- (진로상담 멘토폴) 학생선수 대상 맞춤형 진로상담 지원을 위해 중·고 학교급별 진로상담 멘토폴을 구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 [진로상담지원단(교원, 대학교수 등)] : ('21) 12명 → ('22) 34명 → ('23) 61명
- (온라인 진로상담) 학생선수 진로탐색, 진로진학상담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진로멘토 상담을 확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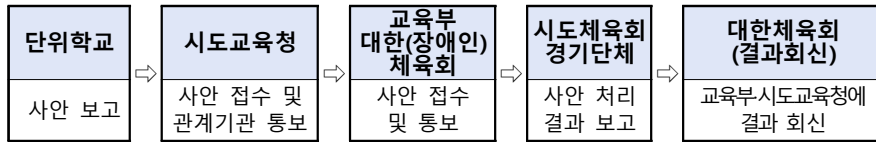
【학생선수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요】

구분	1:1 온라인 진로상담	찾아가는 진로상담
대상	중·고 학생선수, 학부모	전국 중·고 학교운동부(체육중·고 포함)
내용	체육분야 진로, 직업 안내 체육계열 전형 분석 및 진로 사례 소개	학생선수 진로진학 특강, 체육계열 전형 분석 및 지원 전략 등
방법	(비대면) 1:1 온라인 상담	(대면) 모듬별 또는 개별 상담
일정	매주 토 일요일	권역별 일정 고려

- (1:1 온라인 진로상담) 중·고 학생선수, 학부모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설계, 진학 상담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 실시
- ※ [학생선수 참여 현황] : ('21) 300명 → ('22) 250명 → ('23) 339명
- ※ [신청방법] 학교체육 진흥회(http://www.cspep.or.kr) → 체육인재육성 → 신청
- (찾아가는 진로상담) 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권 등 권역별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 진로상담 실시하여 정보제공
- ※ [학생선수 진로상담 참여 현황] : ('21) 154명 → ('22) 500명 → ('23) 600
- ※ 2023년 진로상담멘토폴 61명 운영

□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

-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 발생 시 기관별 세부 처리 절차



□ 학교운동부지도자(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 의무화 강조 안내

- (관련 법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교육 대상)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 * (1,2급)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 (교육 주기/시간) 격년제(2년) / 6시간 이수 의무화
- (교육 방법) 온라인 동영상 수강
 - ※ 스포츠윤리 런(learn) 사이트 가입 및 교육 이수
- (제재 사항 : 미이수자) 1차 서면경고, 2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 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실태조사 정례화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계획(안) 】

- ▶ (대상) 학교운동부 소속 또는 개인 활동 학생선수 약 7만 여명
- ▶ (기간) 2024. 6~7월 중 약 4주간
-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 (내용) 학생선수 (성)폭력, 언어 및 사이버 폭력 피해, 목격 경험 등

- (전수조사)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적극적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 (심층조사) 사안이 중대하거나 은폐 의혹 등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 교육청 관계자가 2차 합동 조사 후 고발·징계 등 조치

□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 (개요)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
 - (세액 공제)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단계	절차	내 용
1	학부모 요구	학부모회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
2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학교운동부는 방과 후 과정(방과 후 학교 포함) 등에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2017년 국세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은 반드시 '방과 후 과정 등'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것만 인정하고 있음
4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로 편입 시켜 운영
5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세액 공제 처리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 납부에 대한「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 * ⑬구분 란에 「방과 후 학교 등의 수업료」기입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체육활동 장려·지원
 - (역할) 교육과정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 지역사회 체육시설 활용, 학교운동부 운영,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 등
 - (구성) 7명 내외(학운위 위원, 체육관련 전문가,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 폭력 담당교사 등 포함) 인원으로 조직 ※ 학교 여건(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조례) 시도교육청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학교에 안내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컨설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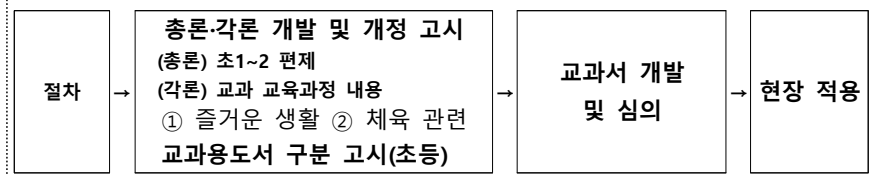
5 초등 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5-1 초등 1, 2학년 「즐거운 생활」 신체활동 영역 분리 추진

□ 학교 교육과정 내 체육활동 확대

- (초등학교) 초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여 편성·운영 (2년간 약 80시간→144시간, 2022개정 교육과정)
-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 (체육)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24.1월)하여 논의 중

【 초1~2학년 '체육' 교과 신설 추진 절차 】



- (중학교)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24.1월)하여 논의 중
- * 2022 교육과정 상, 중1~3학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은 주당 1시간(102시간)
→ [개정] 주당 1시간, 1개 학년은 주당 2시간으로 확대(3년간 총 136시간)

5-2 초등 생존수영교육 효과적 운영

□ 초등 생존수영교육 운영 내실화

- (개요) 초등 생존수영교육은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기 보호 및 구조를 위해 생존능력을 몸소 익히도록 실기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
- (운영계획 수립) 초등 정규교육과정(체육수업 또는 창·체)에 10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교 교육계획서에도 포함하여 내실 있게 운영
- 시도교육청별 조례에 근거,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6학년 대상으로 매년 운영
- ※ 대구·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중

- 계획수립 시, 담당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균등한 교직원 업무분장을 통해 운영

□ 초등학생 생존기능 체득 중심 수영실기교육 강화

- (생존기능 교육 강화) 생존수영의 핵심인 수중에서 자기 생존능력을 체득시키는 생존기능 중심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
- ※ 생존·구조·영법 중심 실기교육 ⇨ 생존기능 중심 이론·실기교육(10시간 이상)
- ※ 초등 생존기능 중심 수영교육자료 활용
- (매뉴얼 활용) 생존수영에 전문성을 가진 해경청과 함께 개발한 생존기능 중심의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실시
- (단위 학교) 학교체육포털에 탑재된 매뉴얼을 참여 강사에게 제공,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생존기능 중심의 생존수영교육이 운영
- ※ 학교에서는 생존수영교육 실시 전, 강사에게 매뉴얼 내용으로 교육 실시할 것을 요청
- ※ [학교체육포털] - [생존기능 중심 수영교육 매뉴얼] 활용

□ 시도교육(지원)청 행정 지원 확대

- (교육청 역할) 학교의 원활한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행·재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수영시설 확보 방안 강구 등 행정 지원
- 지역적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수영장 및 버스업체와 계약체결 지원 등을 통해 교원 업무경감
- (이동식 수영장 운영) 거점학교에 설치 후, 인접 학교에서도 함께 활용하여 예산 절감과 행정 편의를 학교에 제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 초등 생존수영교육 행정 지원 (사례) 】

- ▶ (○○교육청) 교육청이 주관하여 수영장 및 버스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전담팀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 행정 업무 경감하여 사업 운영이 용이하게 지원
- ▶ (○○교육지원청) 지역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인접 초등학교에서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 (○○교육청) 시도의 공공시설 이용조례를 개정하여 이용료 감면 추진

- (민원 제기) '함께학교' 정책 제안에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바우처 형태로 운영 또는 폐지를 제안,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장 지원 방안 모색

□ 초등 생존수영교육 강사 자격

- (자격요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초등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하도록 자격요건을 부여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
 - 학교가 농산어촌과 같이 지리적 여건상 자격취득 강사와 계약이 어려울 때는 수영선수 이력 등 전문 실기 능력 소유자도 가능
- 초등 생존수영교육 강사 자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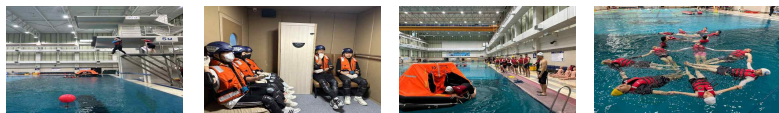
구 분	관련 법규	자격증 명칭
법률	수상구조법	수상구조사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사
	수상레저안전법	인명구조요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수상안전요원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수상안전강사
민간	해경청 승인	생존수영지도사

- (수영장 수질)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하는 수영장 수질은 '체육 시설법 시행규칙(별표6)'의 수영장업 수질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초등 생존수영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 (생존수영 연수 강화) 초등학교원의 생존수영 실기 기능 습득과 이해도 제고 및 지도 역량 강화를 통해 생존수영 전문성 신장
 - ※ [최근 3년 교원 연수 현황] : ('21) 2,256명 → ('22) 4,618명 → ('23) 3,130명
 - ※ 자가 생존능력, 부력 체험, 수중 적응 활동, 선박 탈출하기 등 생존 기능 실습 중심
 - (교원역량 강화) 교수자원 확보 및 시설이 가용한 교육청 해양 수련원(서울·충남), 해양경찰청 교육원 등에서 교원 연수 개설·운영
 - (협력체제 구축) 교육부와 해경청(수련원 등)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생존수영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활용 지원 등 협업
- * 인적·물적 자원 지원, 민간자격 관리 방안 마련, 생존수영 홍보 제고 등

【초등 생존수영 핵심강사 연수】



다이빙 실습 침몰선박 체험 구명뗏목 체험 다수 생존하기

5-3 초등 스포츠강사 운영 현황

□ 초등 스포츠강사 사업 개요

- (도입) 2008년 문체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 교육부와 문체부가 MOU 체결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 ※ 초등학교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역할로 운영
- (예산 분담) 문체부와 시도교육청 5 : 5 대응투자 원칙으로 시작
- 초등 스포츠강사 마약검사 의무화
 - (근거) 초등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3조)에 명시된 보조 강사로서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채용
 - (관련법)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강사 마약검사 의무화) 초등 스포츠강사 채용 전에는 반드시 마약검사 결과 확인 후 계약체결

【강사 결격 사유 관련 법령】

-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제4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추진 경과)

- (2008년) 문체부 100% 예산부담,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전담하고 대한체육회 산하 시·도체육회에서 주관하여 2학기부터 시범운영
- (2009~2012년) 문체부와 시도교육청 5:5 대응투자 비율 유지
- (2013년) 시도교육청 분담 비율 증가(문체부 3 : 7 교육청)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여 초등 스포츠강사 채용인원 감소
- (2014~2023년) 문체부와 시도교육청 2:8 대응투자 비율 유지

- (2017. 9월)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 전환 불가 결정을 내리고 대신, 학교회계직 수준에 준하는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 마련 권고
- ※ 계약기간 연장(11→12개월), 기본급 인상(1,645,660원→1,703,260원), 근무수당 신설(급양비 13만원, 교통비 6만원, 명절휴가비 100만원, 복지비 40만원 등)
- (2008~2024년) 초등 스포츠강사 연도별 인원 및 예산지원 현황
 - 현재 초등 스포츠강사의 기본급에 대해 문체부와 교육청이 1:9 비율로 예산 분담하며, 이외 처우 개선비는 전액 시도교육청이 분담

【 2008~2024 문체부 교육부 예산부담 비율 】

연도	인원(명)	예산부담 비율 (문체부 : 교육청)	문체부 예산(억원)
2008	825	10 : 0	74
2009	856	5 : 5	88
2010	1,214	5 : 5	104
2011	1,516	5 : 5	132
2012	2,852	5 : 5	132
2013	3,800	3 : 7	201
2014	2,911	2 : 8	125
2015	2,408	2 : 8	102
2016	2,098	2 : 8	93
2017	2,020	2 : 8	109
2018	1,961	2 : 8	118
2019	1,914	2 : 8	112
2020	1,902	2 : 8	111
2021	1,910	2 : 8	117
2022	1,720	2 : 8	117
2023	1,667	2 : 8	104
2024	1,688	1 : 9	53

※ (2022년) 전남은 무기계약직(스포츠지도사)으로 전환, '22년 총인원에 미포함

- (향후 추진 계획) 문체부·기재부·교육부, 시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 확보 등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추진

6 놀봄학교 체육활동 지원

6-1 체육단체 연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 문체부와 협력하여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 프로축구연맹 '어린이 축구교실' 등 프로스포츠 단체와 협력하여 질 높은 방과후 체육 프로그램 제공

【 체육단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

- ▶ 프로축구연맹 '어린이 축구교실': ('23년) 수도권 40개교 운영
- ▶ 한국야구위원회 '찾아가는 티볼교실': ('23년) 94개 놀봄학교 신청 및 연계
- ▶ 여자농구연맹 '찾아가는 농구교실': ('23년) 전남지역 15개 놀봄학교 운영

- (체육 프로그램 운영) 대한체육회가 주관, 종목경기단체*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놀이·게임형 체육 프로그램 제공과 전문 강사 지원
*12종목 배구배드민턴피구하키핸드볼티볼럭바족구플로어볼댄스스포츠에어로빅 합합클라이밍

【 놀이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예시) 】



6-2 지역자원 활용 연계 체제 구축

□ 놀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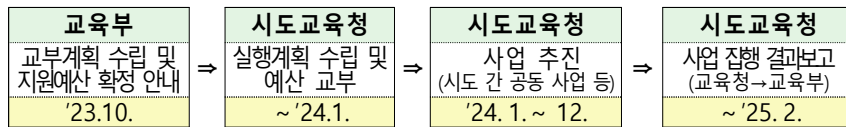
- (온라인 콘텐츠 활용) 학생 발육발달 단계 고려, '메타스포츠스쿨 앱'과 '온라인 튜터링 콘텐츠(148종 동영상)'를 활용하여 흥미로운 신체활동 제공
- (지역체육교육협의체) 교육청-시도별 종목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놀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허브조직(가칭: 놀봄허브)을 구성하여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민·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4년 확대 운영
- (다양한 자원 활용)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놀봄학교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 종합 관리가 가능한 오픈마켓형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 ※ 기관(경기단체 등)에서 프로그램과 인력풀 탑재, 초등학교에서 선택하여 운영

7 2024년 특별교부금 운영 집행계획

(공통)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1 365+ 체육온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지원

- (사업 내용) 학생주도 체육운동아리 활동 지원 및 교내·마을(지역)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개최 지원
※ 시도별 수요 거쳐 차등 교부, 지원사업은 시도별 협의를 통한 공동사업 운영
- (365+ 체육온활동 지원) 학교단위 학생 주도 체육운동아리 운영* 및 교육청단위 교원 연수 및 컨설팅**, 학교간 페스티벌 개최 등 지원사업 운영
* 교내 체육운동아리 운영(장비 구입, 식비·간식비 등)
** 학교급별 프로그램, 교원 콘텐츠 활용 연수, 단위학교 체육온활동 운영 컨설팅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확대(학교→지역→전국) 및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대회 운영
* ('23) 제1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리그(농구) 운영 → ('24.~) (2개종목)
- (추진 방법)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및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원 분야 및 대상 등 세부 계획수립 후 사업 추진



- (지원 예산) 42,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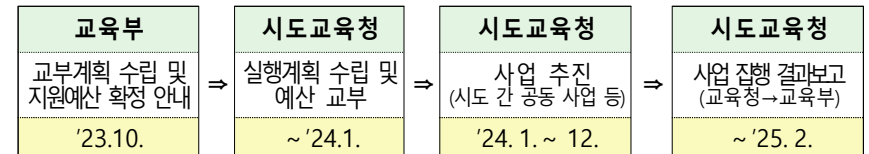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체육온 활동	3,425	487	551	1,444	392	433	356	466	3,954
학교스포츠클럽	5,194	731	827	2,166	588	590	534	699	5,932
소계	8,619	1,218	1,378	3,610	980	1,023	890	1,165	9,886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체육온 활동	609	471	579	964	929	704	655	581	17,000
학교스포츠클럽	913	706	869	1,446	1,394	1,057	982	872	25,500
소 계	1,522	1,177	1,448	2,410	2,323	1,761	1,637	1,453	42,500

※ 사업별 지속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가용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요청

- (유의 사항) 교부액과 참여 학교 등의 불균형 발생 시, 희망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탄력적 예산 집행 가능
- 교내, 마을·지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은 향후 운영 현황 자료 제출
※ 제출 서식 및 시기는 '24년 상반기 별도 안내
※ 시도별 학교 수 및 (여)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부 가능

2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 (사업 내용)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신장 및 인성·정서역량 함양 등 학습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지원멘토단 운영 모델 마련, 확산 도모
- (학습지원멘토단 구성·역량강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교사 대상으로 학습지원멘토단을 구성하여, 학생선수의 지도 역량강화* 후 멘토링 실시
* 학교체육진흥회 주관 운영학교 역량강화 워크숍 (연 2회), 성과공유회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 (추진 방법)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및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원 분야 및 대상 등 세부 계획수립 후 사업 추진



- (지원 예산) 1,7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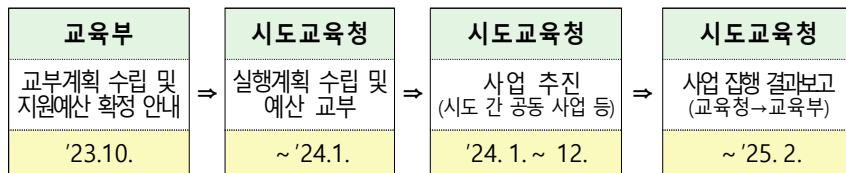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멘토링	60	60	60	60	60	60	60	60	60
e-School	40	40	40	40	40	40	40	40	40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멘토링	60	60	60	60	60	60	60	60	1,020
e-School	40	40	40	40	40	40	40	40	680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700

(선택)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③ 학생 맞춤형 체력향상 및 특화 프로그램 사업지원

- (사업 내용) 체육배려학생(저체력, 비만학생, 여학생 등) 및 일반학생 대상 체력회복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체험, 상담 등 지원
- (학생 맞춤형 체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시도별 여건을 고려한 학생 체력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기자재 확보 등
 - ※ 시도별 수요 거쳐 차등 교부, 지원사업은 시도별 협의를 통한 공동사업 운영
 - ※ 필요시 시도별 유사 사업과 연계 사업 추진 및 수요에 기반하여 학생 맞춤형 체력 향상 및 특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탄력적인 사업 추진
- (추진 방법)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및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원 분야 및 대상 등 세부 계획수립 후 사업 추진



- (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청별 교부 예정액 안내('23.10.) → 예산 교부(~'24.1.) → 교육청-위탁기관 협약 체결('24.1.) → 세부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24.1.~12.) → 집행 결과 보고 등('25.2.)
- (지원예산) 5,100백만원(희망 수요 및 학생 수에 따른 차등 배분)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체력향상 프로그램	911	237	202	232	131	380	119	207	1,09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체력향상 프로그램	184	113	220	255	202	255	297	65	5,100

8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국고)

□ 국립부설학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 (중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강사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통해 운영 내실화
 - ※ (지원내역) 국립중 7개교 대상 강사 인건비, 시설이용비
- (시설 이용료)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인근 체육시설 활용이 가능하도록 경비 지원
-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초중고 주말 활용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력교실 운영 등을 통해 신체활동 제공 확대 및 건강체력 증진
 - ※ (지원내역) 국립학교 29개교(초16, 중7, 특수6) 대상 강사 인건비
 -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24. 9. 1. 개교 예정
- (초등생존수영교육 지원)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역량 및 수상 안전사고 위기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제반 경비 활용
 - ※ (지원내역) 국립초등학교 16교 대상 수영장 이용료, 교통비, 용품구입비 등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학교체육)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3예산 (A)	'24예산 (B)	증감 (B-A)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764	767	3	%
-중학교스포츠클럽 강사 지원	161 (7교×6종목×4시간×30천원×32주)	161 (7교×6종목×4시간×30천원×32주)	0	
-중학교스포츠클럽 시설이용료	90 (7교×2종목×200천원×32주)	90 (7교×2종목×200천원×32주)	0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초·중·특수)	108 (28교×4시간×30천원×32주)	111 (29교×4시간×30천원×32주)	3	
-초등학교 수영교육 강화	405 (8,100×50천원)	405 (8,100×50천원)	0	

9 2024년 학교체육진흥회 사업계획(안)

□ 학교체육 소식지 발간 : 3월~12월

- 체육수업, 스포츠클럽, 운동부, 해외학교체육 등 정보성 콘텐츠 제공 소식지 발간(e-book)

□ 학생 스포츠 기자단 : 4월~12월

-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스포츠 기자단 선발 및 운영
- 학교체육 기사 작성 및 게재, 현장 교육, 취재, 특강 진행

□ 학교체육 정책현황, 만족도 조사 연구 : 4월~12월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정책 사업 결과 수집, 분석, 기록화
- 학교체육 기사 작성 및 게재, 현장 교육, 취재, 특강 진행

□ 틈새(아침)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4월~12월

- 틈새운동 활성화 학교 발굴을 통한 사례 자료 및 영상 제작
- 학교체육 기사 작성 및 게재, 현장 교육, 취재, 특강 진행

□ 학교체육 홍보 및 콘텐츠 개발 : 4월~12월

- 학교체육 홍보 채널 운영 및 관리(유튜브, SNS)
- 학교체육 활성화 자료 및 영상 콘텐츠 제작

□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 5월~10월

-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
- 1대1 학생선수 진로진학 상담(대면 및 비대면)
- 학생선수 진로진학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

□ 학교체육 컨설팅단 운영 : 5월~12월

- 중앙·시도 단위 컨설팅단 구축·운용을 통해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에 안정적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
- 학교체육 컨설팅 매뉴얼 개정 및 보급

□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 연구 : 6월~9월

- 학생선수 폭력 피해 현황 파악 및 조사

□ 대한민국 학교체육 축전 : 7월

- 변화하는 체육교육에 맞는 수업모델 공유·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
- 체육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교수학습 방법 실습
- 대한민국 학교체육 축전 발표 영상 제작 및 보급

□ 초등 생존수영교육 지원 : 8월

- 교육부, 해양경찰청, 한국교원대학교와 협의체 구성 및 초등학교원 생존수영 직무연수 운영하여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신장
- 생존기능 중심 수영 교육 매뉴얼 배포

□ 학교체육 공모전 : 8월~11월

- 학교체육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 학교체육 공모전 영상 및 사례집 제작

□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지원 : 10월~11월

-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운영, 평가, 중계
-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주관종목 개최 (3종목)

□ 제2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대회 : [시기미정]

-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대회 개최 운영 및 중계(2종목)

□ 학교체육 정책협의회 : 연 2회

- 교육부, 교육청, 유관기관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 및 정책현황 공유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운영 및 지원

□ 학생선수 학습지원 멘토링

-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IV. 참고 자료

1 PAPS 및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마감 처리

1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나이스 학교스포츠클럽관리 접속]

❖ 나이스 [체육시스템]의 [학교스포츠클럽관리]에 접속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화면에서 기본내용 입력하고 [저장] → 학교스포츠클럽이 등록된다.

❖ 등록 팝업 화면 활동내역 등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활동내역이 등록된다.

2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마감처리

❖ 나이스 PAPS 마감처리 방법

PAPS 화면 → 마감관리 → 측정마감 → [기안문상신] 버튼 활성화 → 학교장 결재 → 교육청 전송

2 나이스 학교장 확인서 발급 절차

1. 나이스 로그인	2. 나이스 상단 담당업무or운동부(부서장/감독) 클릭
3. [체육] 학교운동부관리 클릭	4. [좌측] 학생선수관리 클릭
5. 학생선택 → 학교장 확인서 출력 클릭	6. 학교장 확인서 발급

3 365+ 체육온활동 콘텐츠 (30개 주제 148종)

□ [초급] 놀이형 365+ 체육온활동 콘텐츠 목록

놀이형 영상 콘텐츠					
놀이형 주제	번호	활동명	놀이형 주제	번호	활동명
플라잉디스크	1	디스크 주고받기	슬래잡기Ⅱ	26	코코 슬래잡기
	2	날아가는 디스크		27	너구리다
	3	디스크 명중		28	스머프 슬래잡기
	4	디스크 골인		29	말미잘 슬래잡기
	5	디스크 사칙연산		30	개미 슬래
줄넘기	6	혼자서 줄넘기	진놀이	31	나이 먹기
	7	스피드 줄넘기		32	경찰과 도둑
	8	둘이서 줄넘기		33	총전 에너지 진놀이
	9	다 함께 줄넘기 (8자 줄넘기 편)		34	잡을까 말까?
	10	다 함께 줄넘기 (꼬마야 꼬마야 편)		35	팀전 다방구
전래놀이Ⅰ	11	비석 치기	피구	36	반코트 피구
	12	사방치기		37	주사위 피구
	13	구슬치기		38	짬 피구
	14	허수아비 놀이		39	보디가드 피구
	15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40	원형 피구
전래놀이Ⅱ	16	한 발 뛰기	야구·배구	41	주먹 야구
	17	고무줄 놀이		42	콘 돌아오기 발야구
	18	사거리 놀이		43	피하기 발야구
	19	강 건너기 놀이		44	던지기 배구
	20	돈가스 놀이		45	네모 배구
슬래잡기Ⅰ	21	8자 놀이	축구·농구	46	콘 축구
	22	보물 슬래잡기		47	고무줄 축구
	23	바나나 슬래잡기		48	하나 되는 축구 패스 게임
	24	고양이와 쥐		49	농구 패스 게임
	25	한 발 슬래잡기		50	도전! 득점왕

□ [중급] 게임형 365+ 체육온활동 콘텐츠 목록

게임형 체육온활동 영상 콘텐츠					
게임형 주제	번호	활동명	게임형 주제	번호	활동명
배드민턴	1	배드민턴 체조	배구	25	스파이크 놀이
	2	배려민턴		26	일대일 코트 플레이
	3	배구민턴		27	배구풍당
	4	웃놀이민턴		28	풍선 배구
농구	5	도전 바스켓 챌린지	체력운동	29	계단 도장깨기
	6	투게더 바스켓		30	두 줄 넘기
	7	포인트 농구		31	더블더치
	8	릴레이 농구		32	주사위 헬스
탁구	9	플로어 탁구 (땅 탁구)	피구	33	점핑 체조
	10	스쿼시 탁구 (벽 탁구)		34	3인 피구
	11	틱택톡 탁구		35	짐볼 피구
	12	챌린지 탁구		36	투공 피구
	13	슈팅 탁구		37	꼬리잡기 피구
플라잉디스크	14	디스크 싸커	축구	38	슬라이딩 피구
	15	디스크 컬링		39	골프 축구
	16	디스크 프리스비		40	원바! 노바! 축구
	17	디스크 슈팅		41	리듬 축구 체조
	18	디스크 무한도전		42	사격 축구
댄스	19	핸드셰이크 댄스	족구	43	다이렉트 센터 축구
	20	네임 릴레이 댄스		44	재활용 족구 챌린지
	21	이모티콘 댄스		45	손 족구
	22	손비트 / 펜비트 댄스		46	벽 족구
	23	셔플 댄스		47	원 족구
배구	24	스쿼시 배구		48	릴레이 족구

□ [고급] 스포츠형 365+ 체육온활동 콘텐츠 목록

스포츠형 체육온활동 영상 콘텐츠					
스포츠형 주제	번호	활동명	스포츠형 주제	번호	활동명
배구	1	원바운드 모두 배구	표현활동	26	액션 치어리딩
	2	경청 배구		27	생각대로 라인댄스
	3	구역 배구		28	점프점프 리듬트레이닝
	4	함께 앉아 배구		29	단어 릴레이댄스
	5	두 개의 공 집중 배구		30	창작댄스
저글링	6	스카프휠링 저글링	농구	31	스킬스 챌린지 농구
	7	친구와 배틀 저글링		32	통통 바운딩 농구
	8	어깨동무 저글링		33	노바운드 농구
	9	다양한 공 저글링		34	다이얼넘버링 농구
	10	리듬저글 트레이닝		35	팀플레이미션 농구
탁구	11	정밀 탁구	플라잉 디스크	36	가로세로빙고 디스크
	12	회오리 탁구		37	스틸터치 디스크
	13	캐치볼 탁구		38	프리드로우샷 디스크
	14	징검다리 탁구		39	플라잉디스크 넷볼
	15	릴레이 탁구		40	플라잉디스크 티볼
배드민턴	16	표적 배드민턴	야구	41	펀치 야구
	17	높이멀리 배드민턴		42	킥 야구
	18	맨손 배드민턴		43	패스 야구
	19	협동 배드민턴		44	핑고 야구
	20	릴레이 배드민턴		45	스킬챌린지 야구
축구	21	맞수대결 풍선 축구	체력운동	46	버피게임
	22	한 마음 바운드 축구		47	병뚜껑 서틀런
	23	스피드 우선 축구		48	주사위 서틀런
	24	패스 연결 축구		49	주사위 태그
	25	사차원 축구		50	체력운동 마블

4 e-school 학습지원 콘텐츠

□ 초등학교 교과콘텐츠 : 교과(14개), 창·체(4개), 과목(30개)

학년	교과목명	과목명	운영 회차
3학년	국어3	국어3-①	47
		국어3-②	40
	수학3	수학3-①	29
		수학3-②	29
		창의적 체험활동	미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3 환경 지속가능발전 교육3
4학년	국어	국어4-①	44
		국어4-②	43
	수학	수학4-①	29
		수학4-②	29
		창의적 체험활동	미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4 환경 지속가능발전 교육4
5학년	국어	국어5-①	50
		국어5-②	37
	수학	수학5-①	29
		수학5-②	28
	영어	영어5	44
	음악	음악5	34
	미술	미술5	34
	창의적 체험활동	미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5 환경 지속가능발전 교육5	15 10
6학년	국어	국어6-①	47
		국어6-②	40
	수학	수학6-①	30
		수학6-②	30
	영어	영어6	44
	음악	음악6	34
	미술	미술6	34
	창의적 체험활동	미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6 환경 지속가능발전 교육6	17 10

□ 중학교 교과콘텐츠 : 교과(38개), 과목(76개)

구분	교과(회차)	과목	회차 수
1학년	국어1(51)	국어1-①	25
		국어1-②	26
	도덕1(34)	도덕1-①	17
		도덕1-②	17
	사회1(34)	사회1-①	17
		사회1-②	17
	수학1(51)	수학1-①	25
		수학1-②	26
	과학1(51)	과학1-①	26
		과학1-②	25
	정보(34)	정보①	17
		정보②	17
	체육1(34)	체육1-①	17
		체육1-②	17
	음악(51)	음악①	26
		음악②	25
	영어1(51)	영어1-①	25
		영어1-②	26
	기술가정1(51)	기술가정1-①	17
		기술가정1-②	17
2학년	미술(51)	미술①	26
		미술②	25
	역사1(34)	역사1-①	17
		역사1-②	17
	국어2(68)	국어2-①	34
		국어2-②	34
	사회2(34)	사회2-①	17
		사회2-②	17
	수학2(51)	수학2-①	26
		수학2-②	25
	과학2(51)	과학2-①	26
		과학2-②	25
	체육2(34)	체육2-①	17
		체육2-②	17
	영어2(51)	영어2-①	24
		영어2-②	27
	기술가정2(34)	기술가정2-①	18
		기술가정2-②	16
	도덕2(34)	도덕2-①	17
		도덕2-②	17
	역사2(34)	역사2-①	17
		역사2-②	17

3학년	국어3(68)	국어3-①	34
		국어3-②	34
	수학3(51)	수학3-①	26
		수학3-②	25
	과학3(51)	과학3-①	26
		과학3-②	25
	체육3(34)	체육3-①	17
		체육3-②	17
	영어3(34)	영어3-①	17
		영어3-②	17
선택 교과	생활프랑스어(34)	생활프랑스어①	17
		생활프랑스어②	17
	한문(34)	한문①	17
		한문②	17
	보건(34)	보건①	17
		보건②	17
	생활스페인어(34)	생활스페인어①	17
		생활스페인어②	17
	진로와 직업(34)	진로와 직업①	17
		진로와 직업②	17
	환경(34)	환경①	17
		환경②	17
	생활일본어(34)	생활일본어①	17
		생활일본어②	17
	생활중국어(34)	생활중국어①	17
		생활중국어②	17
	생활러시아어(34)	생활러시아어①	17
		생활러시아어②	17
	생활베트남어(34)	생활베트남어①	17
		생활베트남어②	17
	생활아랍어(34)	생활아랍어①	17
		생활아랍어②	17
	생활독일어(34)	생활독일어①	17
		생활독일어②	17

□ **고등학교 교과콘텐츠 : 교과(72개), 과목(144개)**

교과(회차)	과목	회차 수
국어(51)	국어①	25
	국어②	26
심화국어(34)	심화국어①	17
	심화국어②	17
영어(51)	영어①	25
	영어②	26
수학(51)	수학①	24
	수학②	27
통합사회(51)	통합사회①	25
	통합사회②	26
통합과학(51)	통합과학①	27
	통합과학②	24
과학탐구실험(17)	과학탐구실험①	8
	과학탐구실험②	9
음악(34)	음악①	17
	음악②	17
미술(34)	미술①	17
	미술②	17
체육(34)	체육①	16
	체육②	18
정보(51)	정보①	22
	정보②	29
일본어 I (34)	일본어 I -①	17
	일본어 I -②	17
중국어 I (34)	중국어 I -①	17
	중국어 I -②	17
한문 I (34)	한문 I -①	18
	한문 I -②	16
스페인어 I (34)	스페인어 I -①	17
	스페인어 I -②	17
세계사(34)	세계사①	17
	세계사②	17
문학(51)	문학①	26
	문학②	25
수학 I (51)	수학 I -①	25
	수학 I -②	26
영어 회화(51)	영어 회화①	25
	영어 회화②	26
한국지리(43)	한국지리①	22
	한국지리②	21
사회·문화(43)	사회·문화①	22
	사회·문화②	21
철학(34)	철학①	17
	철학②	17

생명과학 I (43)	생명과학 I -①	22
	생명과학 I -②	21
생활과 과학(34)	생활과 과학①	17
	생활과 과학②	17
운동과 건강(34)	운동과 건강①	19
	운동과 건강②	15
미술 감상과 비평(34)	미술 감상과 비평①	17
	미술 감상과 비평②	17
음악 감상과 비평(34)	음악 감상과 비평①	17
	음악 감상과 비평②	17
기술·가정(34)	기술·가정①	17
	기술·가정②	17
실용 국어(51)	실용 국어①	24
	실용 국어②	27
실용 수학(51)	실용 수학①	25
	실용 수학②	26
경제(34)	경제①	17
	경제②	17
경제수학(34)	경제수학①	17
	경제수학②	17
영어 I (51)	영어 I -①	25
	영어 I -②	26
세계지리(34)	세계지리①	17
	세계지리②	17
동아시아사(34)	동아시아사①	15
	동아시아사②	19
확률과 통계(51)	확률과 통계①	26
	확률과 통계②	25
독일어 I (34)	독일어 I -①	17
	독일어 I -②	17
프랑스어 I (34)	프랑스어 I -①	17
	프랑스어 I -②	17
물리학Ⅱ(34)	물리학Ⅱ-①	17
	물리학Ⅱ-②	17
독서(51)	독서①	25
	독서②	26
수학Ⅱ(51)	수학Ⅱ-①	25
	수학Ⅱ-②	26
영어독해와 작문(51)	영어독해와작문①	25
	영어독해와작문②	26
한국사(51)	한국사①	25
	한국사②	26
물리학 I (34)	물리학 I -①	17
	물리학 I -②	17
화학 I (34)	화학 I -①	17
	화학 I -②	17
지구과학 I (43)	지구과학 I -①	22
	지구과학 I -②	21

정치와 법(34)	정치와법①	17
	정치와법②	17
생활과 윤리(34)	생활과윤리①	17
	생활과윤리②	17
윤리와 사상(34)	윤리와사상①	17
	윤리와사상②	17
스포츠생활(34)	스포츠생활①	17
	스포츠생활②	17
실용경제(34)	실용경제①	17
	실용경제②	17
진로와 직업(34)	진로와직업①	17
	진로와직업②	17
여행지리(34)	여행지리①	18
	여행지리②	16
생명과학Ⅱ(34)	생명과학Ⅱ-①	17
	생명과학Ⅱ-②	17
창의경영(34)	창의경영①	17
	창의경영②	17
공학일반(34)	공학일반①	17
	공학일반②	17
미적분(51)	미적분①	27
	미적분②	24
영어Ⅱ(51)	영어Ⅱ①	26
	영어Ⅱ②	25
보건(34)	보건①	17
	보건②	17
베트남어 I (34)	베트남어 I ①	17
	베트남어 I ②	17
화학Ⅱ(34)	화학Ⅱ①	17
	화학Ⅱ②	17
지구과학Ⅱ(34)	지구과학Ⅱ①	17
	지구과학Ⅱ②	17
가정과학(34)	가정과학①	17
	가정과학②	17
화법과 작문(51)	화법과 작문①	24
	화법과 작문②	27
실용 영어(51)	실용 영어①	26
	실용 영어②	25
심리학(34)	심리학①	17
	심리학②	17
과학사(34)	과학사①	17
	과학사②	17
언어와 매체(34)	언어와 매체①	17
	언어와 매체②	17
융합과학(34)	융합과학①	17
	융합과학②	17
사회문제 탐구(34)	사회문제 탐구①	17
	사회문제 탐구②	17

교과(회차)	과목	회차 수
국어(51)	국어①	25
	국어②	26
심화국어(34)	심화국어①	17
	심화국어②	17
영어(51)	영어①	25
	영어②	26
수학(51)	수학①	24
	수학②	27
통합사회(51)	통합사회①	25
	통합사회②	26
통합과학(51)	통합과학①	27
	통합과학②	24
과학탐구실험(17)	과학탐구실험①	8
	과학탐구실험②	9
음악(34)	음악①	17
	음악②	17
미술(34)	미술①	17
	미술②	17
체육(34)	체육①	16
	체육②	18
정보(51)	정보①	22
	정보②	29
일본어 I (34)	일본어 I -①	17
	일본어 I -②	17
중국어 I (34)	중국어 I -①	17
	중국어 I -②	17
한문 I (34)	한문 I -①	18
	한문 I -②	16
스페인어 I (34)	스페인어 I -①	17
	스페인어 I -②	17
세계사(34)	세계사①	17
	세계사②	17
문학(51)	문학①	26
	문학②	25
수학 I (51)	수학 I -①	25
	수학 I -②	26
영어 회화(51)	영어 회화①	25
	영어 회화②	26
한국지리(43)	한국지리①	22
	한국지리②	21
사회·문화(43)	사회·문화①	22
	사회·문화②	21
철학(34)	철학①	17
	철학②	17
생명과학 I (43)	생명과학 I -①	22
	생명과학 I -②	21

생활과 과학(34)	생활과 과학①	17
	생활과 과학②	17
운동과 건강(34)	운동과 건강①	19
	운동과 건강②	15
미술 감상과 비평(34)	미술 감상과 비평①	17
	미술 감상과 비평②	17
음악 감상과 비평(34)	음악 감상과 비평①	17
	음악 감상과 비평②	17
기술·가정(34)	기술·가정①	17
	기술·가정②	17
실용 국어(51)	실용 국어①	24
	실용 국어②	27
실용 수학(51)	실용 수학①	25
	실용 수학②	26
경제(34)	경제①	17
	경제②	17
경제수학(34)	경제수학①	17
	경제수학②	17
영어 I (51)	영어 I -①	25
	영어 I -②	26
세계지리(34)	세계지리①	17
	세계지리②	17
동아시아사(34)	동아시아사①	15
	동아시아사②	19
확률과 통계(51)	확률과 통계①	26
	확률과 통계②	25
독일어 I (34)	독일어 I -①	17
	독일어 I -②	17
프랑스어 I (34)	프랑스어 I -①	17
	프랑스어 I -②	17
물리학Ⅱ(34)	물리학Ⅱ-①	17
	물리학Ⅱ-②	17
독서(51)	독서①	25
	독서②	26
수학Ⅱ(51)	수학Ⅱ-①	25
	수학Ⅱ-②	26
영어독해와 작문(51)	영어독해와작문①	25
	영어독해와작문②	26
한국사(51)	한국사①	25
	한국사②	26
물리학 I (34)	물리학 I -①	17
	물리학 I -②	17
화학 I (34)	화학 I -①	17
	화학 I -②	17
지구과학 I (43)	지구과학 I -①	22
	지구과학 I -②	21
정치와 법(34)	정치와법①	17
	정치와법②	17

생활과 윤리(34)	생활과윤리①	17
	생활과윤리②	17
윤리와 사상(34)	윤리와사상①	17
	윤리와사상②	17
스포츠생활(34)	스포츠생활①	17
	스포츠생활②	17
실용경제(34)	실용경제①	17
	실용경제②	17
진로와 직업(34)	진로와직업①	17
	진로와직업②	17
여행지리(34)	여행지리①	18
	여행지리②	16
생명과학Ⅱ(34)	생명과학Ⅱ-①	17
	생명과학Ⅱ-②	17
창의경영(34)	창의경영①	17
	창의경영②	17
공학일반(34)	공학일반①	17
	공학일반②	17
미적분(51)	미적분①	27
	미적분②	24
영어Ⅱ(51)	영어Ⅱ①	26
	영어Ⅱ②	25
보건(34)	보건①	17
	보건②	17
베트남어 I (34)	베트남어 I ①	17
	베트남어 I ②	17
화학Ⅱ(34)	화학Ⅱ①	17
	화학Ⅱ②	17
지구과학Ⅱ(34)	지구과학Ⅱ①	17
	지구과학Ⅱ②	17
가정과학(34)	가정과학①	17
	가정과학②	17
화법과 작문(51)	화법과 작문①	24
	화법과 작문②	27
실용 영어(51)	실용 영어①	26
	실용 영어②	25
심리학(34)	심리학①	17
	심리학②	17
과학사(34)	과학사①	17
	과학사②	17
언어와 매체(34)	언어와 매체①	17
	언어와 매체②	17
융합과학(34)	융합과학①	17
	융합과학②	17
사회문제 탐구(34)	사회문제 탐구①	17
	사회문제 탐구②	17

□ 특화콘텐츠 : 5종 63회차

교과(회차)	과목	회차 수	학년
스포츠 세계 문화(2)	학생선수 국제대회 출전 도우미	2	초·중·고
스포츠 진로 학습(5)	학생선수 진로상담	3	중·고
	학생선수 공부법	2	
스포츠 인문 과학(13)	책과 영화로 배우는 스포츠 인문학	1	
	스포츠에 숨은 과학 이야기	2	
	스포츠의 역사	5	
도핑방지교육(4)	도핑과 약물의 부작용	1	초·중·고
	도핑방지교육	3	
스포츠 인권 교육(3)	스포츠와 인권	2	초·중·고
	스트레스 관리	1	중·고

5 늘봄학교 지원 체육단체 업무협약 현황

□ 주요 내용

-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늘봄학교에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목별 경기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여 프로그램 지원

□ 협약기관 : 총 35개 기관 (33개 종목단체, 2개 대학교)

구분	단체명	협약일	구분	단체명	협약일
1	한국야구위원회	'23.4.17.	19	한국저글링협회	'23.6.28.
2	대한축구협회	'23.4.28.	20	한국킨볼협회	'23.6.28.
3	대한태권도협회	'23.6.20.	21	한국풋살연맹	'23.6.28.
4	대한검도회	'23.6.28.	22	대한민국줄넘기협회	'23.6.28.
5	대한골프협회	'23.6.28.	23	대한배구협회	'23.6.28.
6	대한고도협회	'23.6.28.	24	대한배드민턴협회	'23.6.28.
7	대한넛볼협회	'23.6.28.	25	대한보디빌딩협회	'23.6.28.
8	대한당구연맹	'23.6.28.	26	대한볼링협회	'23.6.28.
9	대한럭비협회	'23.6.28.	27	대한수영연맹	'23.6.28.
10	대한롤러스포츠연맹	'23.6.28.	28	대한스키협회	'23.6.28.
11	대한민국농구협회	'23.6.28.	29	대한씨름협회	'23.6.28.
12	대한민국족구협회	'23.6.28.	30	대한양궁협회	'23.6.28.
13	대한테니스협회	'23.6.28.	31	대한유도회	'23.6.28.
14	대한플로어볼협회	'23.6.28.	32	대한육상연맹	'23.6.28.
15	대한피구연맹	'23.6.28.	33	대한탁구협회	'23.6.28.
16	대한하키협회	'23.6.28.	34	한국체육대학교	'23.6.20.
17	대한핸드볼협회	'23.6.28.	35	용인대학교	'23.7.5.
18	여자농구연맹	'23.6.28.			

6 국민체력 100 사업 및 시도별 체력인증센터 현황

□ 국민체력 100사업 개요

- (운영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센터
- (지원 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지원
- (신청) 학교인근 체력인증센터 홈페이지·전화로 예약·신청
 - ※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학교(학급)가 개별 방문하여 센터 내 운영 중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문의처) 지역별 체력인증센터 문의
 - ※ 홈페이지: <http://nfa.kspo.or.kr>, 대표센터 ☎ 02-410-1014

연번	시도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1	서울	성동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02-2286-7190
2		서초	서초구민체육센터	02-591-5999
3		마포	마포구민체육센터	02-337-7815
4		동작	사당종합체육관	02-591-0101
5		중구	충무스포츠센터	02-2280-8500
6		서대문	서대문문화체육회관	02-360-8569
7		강북	강북웰빙스포츠센터	02-980-0101
8		KSPO송파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02-410-1014
9		KSPO송파(출장A)		
10		KSPO송파(출장B)		
11	부산	남구	남구국민체육센터	051-626-8215
12		사하	사하구국민체육센터	051-202-3500
13		사상	사상구국민체육센터	051-326-0100
14		금정(스포원)	스포원파크	051-550-1631
15		동구	동구국민체육문화센터	051-604-6030
16		연제	동해선 거제역 2층	051-710-7412
17	대구	달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053-634-8602
18		KSPO대구	육상진흥센터	053-716-7336
19		KSPO대구(출장A)		
20		KSPO대구(출장B)		

연번	시도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21	인천	동구	송림체육관	032-456-2225
22		미추홀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032-888-1102
23	광주	광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062-955-9109
24		동구	조선대학교	062-230-7419
25		북구	북구태봉생활체육관	062-716-6100
26		서구	서구보건소 4층	062-350-4566
27		KSPO광주	광주월드컵경기장	062-710-7336
28		KSPO광주(출장)		
29	대전	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042-485-7330
30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스포츠시설	052-259-1471
31	세종	세종	종촌동복합커뮤니티센터	044-868-8323
32	경기	화성	화성국민체육센터	031-278-7548
33		부천	오정레포츠펙터	070-7707-5306
34		오산	오산스포츠센터	031-378-9220
35		성남	성남종합스포츠센터	031-739-6717
36		의정부	의정부종합운동장	031-828-2100
37		시흥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031-498-7338
38		광주	동원대 효암관	031-799-8830
39		고양	고양체육관	031-930-1165
40		포천	영중체육문화센터	031-535-0151
41		안산	한양대ERICA캠퍼스 체육관	031-436-8052
42		양평	물맑은양평체육관	031-772-9775
43		수원	수원체력인증센터	031-249-1485
44	강원	원주	원주국민체육센터	033-762-0110
45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	033-649-7718
46		삼척	삼척시민체육관	033-570-6857
47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스포츠센터	033-250-6793
48		태백	태백시 볼링장	033-554-1130

연번	시도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49	충북	청주	청주종합운동장	043-267-7330
50		영동	영동국민체육센터	043-740-1607
51		충주	충주종합운동장	043-852-7330
52		증평	증평생활체육관	043-835-4171
53		보은	결초보은체육관	043-544-9956
54	충남	진천	초평생활체육공원	043-534-5689
55		천안	천안종합운동장	041-622-9350
56		계룡	구룡콘도 1층	042-840-6302
57		KSPO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041-547-7336
58		KSPO아산(출장)		
59	전북	남원	춘향골체육관	063-633-7330
60		전주	전주화산체육관	063-221-7330
61		군산	군산월명체력증진센터	063-454-8761
62		익산	익산종합운동장	063-838-8983
63		정읍	샘골보건지소	063-531-0603
64	전남	목포	목포국제축구센터	061-278-0155
65		순천	문화건강센터수영장	061-749-8946
66		곡성	곡성레저문화센터	061-363-4337
67		나주	동신대학교체육관	061-330-3388
68		신안	암태국민체육센터	061-240-8367
69		영암	세한대학교 복지회관	061-469-1136
70		무안	목포대학교 체육관	061-450-2387
71	경북	포항	장량국민체육센터	054-272-8519
72		안동	안동시민운동장	054-854-7338
73		김천	김천종합운동장	054-433-0020
74		구미	경운대학교	054-479-1369
75		경산	대구의한대학교 기린체육관	053-819-1838
76		영주	철탄체육관	054-637-0100
77	경남	창원	시민생활체육관	055-712-0781
78		사천	사천국민체육센터	055-835-2066
79		창원마산회원	마산대학교 미래관	055-230-0155
80	제주	제주	종합경기장 수영장	064-759-8795

7 2024 도핑방지 금지목록 변경사항

2024년도 「금지목록 국제표준」 주요 변경사항



☑ 'Tramadol'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추가

- Tramadol, S7. 마약 분류에 추가

- Tramadol은 수년동안 WADA 금지목록 모니터링에 포함되었으며 자전거, 럭비, 축구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에서 과사용 되고 있음이 확인됨
- WADA의 연구에 따르면, Tramadol은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 및 Opioid(아편유사제) 특성으로 인해 선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됨

☑ 직장 투여경로의 S9.글루코코르티코이드 배출기간 명시

투여경로	약 물	배출기간
직장경로 (Rectal, 좌약)	기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3일
	Triamcinolone diacetate; Triamcinolone acetonide	10일

* 위 정보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권고사항이며 선수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

☑ M1.1. 혈장분리교환술을 통한 혈장 공여 허용(헌혈허용)

- 혈액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료기관, 헌혈의 집)에서 혈장분리교환술을 통한 혈장 또는 혈장 성분의 공여 허용

헌혈은 크게 전혈헌혈과 성분헌혈로 나눌 수 있는데, 성분헌혈의 경우 혈액을 재주입하는 행위로 인해 M1. 혈액 및 혈액 성분의 조작에 해당하여 금지되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혈장분리교환술을 통해 선수의 혈장 또는 혈장성분을 기증하는 것은 더 이상 금지되지 않음

	2023년도	2024년도
수혈	금지	금지
전혈헌혈	허용	허용
성분헌혈	금지	허용

- ✓ 혈장분리교환술: 혈액 내의 혈장을 분리한 후 다시 주입하는 치료법
- ✓ 전혈헌혈: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헌혈
- ✓ 성분헌혈: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 혈장 등 일부 성분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헌혈

📢 권고사항: 의료기록이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헌혈 날짜와 장소를 포함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권고(ex. 헌혈증서 등)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 3. 24.]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5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 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3. 3. 14.>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0. 10. 20., 2023. 3. 14.>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20.>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미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 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 수당을 지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 ③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조·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 2. 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운영
5.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와 협력)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부칙 <제19234호,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⑪ 생략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2.>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 4. 20.]

[제목개정 2023. 9. 12.]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4. 20.>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체험 활동 또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본조신설 2021. 4. 20.]

부칙 <제33723호, 2023. 9. 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생략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4.] [교육부령 제272호, 2022. 7. 6., 일부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7. 6.>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6.>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 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에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7. 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0.>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전문개정 2006. 1. 10.]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3. 4.>
 ②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 5. 22., 2016. 3.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전문개정 2006. 1. 10.]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 1. 10.>
 ②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③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06. 1. 10.]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② 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 ③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
- ④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22. 7. 6.]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7. 6.>
 1.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춘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 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2. 3.]

부칙 <제272호, 2022. 7. 6.>

이 규칙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4.]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검진은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20. 1. 9.>

②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6. 3. 4.,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제6조(별도의 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0., 2009. 5. 22.>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 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2.]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③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3. 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3. 제6조에 따른 별도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④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0. 1. 9.>

⑤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⑥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⑦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4.>

[전문개정 2006. 1. 10.]

[제목개정 2016. 3. 4.]

제10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예방조치 및 체력증진 등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09. 5. 22., 2016. 3. 4.>

②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16. 3. 4.>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권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 3. 4., 2020. 1. 9.>

⑤ 교육감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건강조사 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16. 3. 4.]

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시책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학교(이하 “표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③ 표본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삭제 <2016. 3. 4.>

⑤ 삭제 <2016. 3. 4.>

[제목개정 1997. 12. 31., 2006. 1. 10.]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1999. 3. 8., 2006. 1. 10.]

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 10.]

부칙 <제240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양정기준('21.8월)

< 징계양정기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과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
1. 학생선수 대상 폭력				
1) 폭력*	견책-감봉	정직- 해고	해고	
2) 폭력 행위 방조/묵인	견책	감봉	정직	해고
2.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1) 성희롱**	정직	정직- 해고	해고	
2) 성폭행		해고		
3) 성폭력 방조/묵인	견책~감봉	정직	해고	

* 신체, 언어, 사이버 폭력 등 일체

**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

※ 사이버 성폭행: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11 학교장 확인서(대회 참가 신청용)

■[대회 참가 신청용 2023.3.1 이후 적용]

학교장 확인서

학교명	지역명 학교명 예) 서울 ○○초	종목명	농구
		출석인정 일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학교 담당자	성 명	종별	남(여)초, 남(여)중, 남(여)고
	연락처	적용년도 (기간)	2024년 ('24.3.1. ~ '25.2.28.)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용일수와 최저학력제 확인 현황

순	이름	①누적사용일수 /인정일수	②최저학력제 확인(○,×)	순	이름	①누적사용일수/ 인정일수	②최저학력제 확인(○,×)
1		/		11		/	
2		/		12		/	
3		/		13		/	
4		/		14		/	
5		/		15		/	
6		/		16		/	
7		/		17		/	
8		/		18		/	
9		/		19		/	
10		/		20		/	

※ 작성방법

- 학교급별 출석인정일수 적용: 대회·훈련 참가 누적사용일수 기입 / 출석인정일수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예) 학기 초부터 현재까지 대회 및 훈련참가 출석인정결석일수 총합이 10일 경우 ⇨ 표기: (고) 10/50
- 최저학력제: 단위 학교에서 확인 여부만 표시 ※ 학교장 확인: ○표시, 학교장 미확인: × 표시
※ '×' 표시는 최저학력 미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학교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상/기준) 초4 ~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적용
-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년도 1학기말 성적)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실시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
- (최저학력 미도달)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하여 미도달 학생선수 이수 후 대회참가 가능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위와 같이 대회 및 훈련 출석인정 사용일수와 최저학력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000학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